



민방위 표준훈련 지침서

2023년 민방위 실시훈련(민방공, 화재) 중심



2022. 12.



행정안전부
(민 방 위 과)



본 지침서는 지역별 안보·재난 여건에 맞는 민방위훈련 추진에
필요한 민방위 사태 유형별 훈련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사업장으로 하여금 민방위훈련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음

※ 2023년 전국단위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 계획(안)

- 민방공 훈련(5월), 화재 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시기조정)

I	개 요	7
II	훈련 실행지침	11
III	확인 및 협조사항	17
IV	유형별 훈련 방법	21
	1. 민방공 대피훈련	23
	〈주민 대피훈련〉	24
	〈차량 및 주민 통제〉	24
	〈화생방 대응훈련〉	25
	2. 화재 대피훈련	75
V	부 록 (훈련 시 국민행동요령)	119

2023년 민방위 실시훈련(민방공, 화재) 중심

I

- 법적 근거
- 작성 배경
- 적용 범위
- 작성지침 및 방향





I | 개 요

I. 개 요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4조(민방위 훈련)

■ 작성 배경

- 담당자의 잦은 교체, 훈련지식·경험 부족으로 민방위 훈련업무 추진 어려움
- 민방위 훈련의 표준 모델 부재로 지역마다 훈련 실행 역량 편차 해소 필요

■ 적용 범위

- 민방위 사태별 훈련종목을 선정하고, 훈련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기술
- 민방위훈련 절차에 대해 계획수립·준비, 훈련실시, 훈련통제 및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 제시
- 민방위 사태별 훈련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민방위훈련 담당자의 업무이해 도모

■ 작성지침 및 방향

- 민방위대 임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 및 재난대비에 적합한 훈련유형 도출
- 민방공, 생활과 밀접한 재난(화재) 대비훈련 중심 상세작성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민방위훈련 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훈련절차, 임무 카드 마련 등으로 현장 적용성을 제고토록 작성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 록

민방위 표준훈련 지침서

2023년 민방위 실시훈련(민방공, 화재) 중심

II

훈련 실행지침

- 훈련유형 선정
- 훈련 계획수립





II

훈련 실행지침

■ 훈련 유형 선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

민방위사태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 본 지침서(2022.12.개정판)에서는 2023년 전국단위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으로 실시할 민방공 대피훈련 및 화재 대피훈련 중점 서술

■ 훈련 계획수립

- 민방위훈련 계획 수립 시 훈련 개요, 훈련 준비, 실시, 홍보, 평가 5단계로 구성

① 훈련 개요

- 훈련이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훈련목표와 중점사항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훈련실시 후 기대효과 달성 가능
 - 훈련기관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훈련계획 수립으로 훈련기획 의도대로 훈련진행 추진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훈련기관장)의 훈련지침을 반영하여 훈련목표와 중점, 훈련방향 구체화

② 훈련 준비

- 훈련 실시 전 훈련 대상 식별 및 훈련과제를 판단하고 훈련지역과 장소별 특성에 맞는 훈련 상황 설정으로 실전훈련 분위기 확립
 - 훈련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훈련자원으로 소방·경찰, 응급복구 등의 긴급구조 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민방위대원·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등 실제 사태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 훈련과제는 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주민 대피, 응급구조 및 복구 등 훈련요원에 의해 실행될 행동요령을 세부적인 훈련과제로 도출
 - 훈련지역과 장소의 환경에 맞게 훈련이 진행되도록 훈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

③ 훈련 실시

- 훈련 실시 단계에서는 훈련시간 편성, 훈련 기관별·개인별 임무와 역할 수행, 훈련메시지 부여 등을 통해 실제 사태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진행
 - 훈련시간 편성은 참가기관과 인력이 훈련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
 - 훈련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이 소관분야별 훈련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협업 기능이 작동하도록 훈련 진행
 - 개인별 임무와 역할은 훈련반* 구성을 통해 개인별로 부여하고 반별 적정 편성을 통한 역할 수행
 - ※ 상황전파, 대피유도, 구조, 현장대응 등으로 구성, 훈련유형 및 기관에 따라 조정
 - 훈련메시지는 훈련참여자에게 사건을 알려주고 훈련목표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수단으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 메시지는 경보 발령, 상황실, 기관장, 훈련 방송, 휴대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훈련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기관별·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훈련 진행



4 훈련 홍보

- 민방위훈련에 대한 실효성 인식 제고 및 국민안전의식 강화
 - 명확한 훈련정보 제공 및 훈련안내를 통해 국민불편 최소화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위해 지역 저명인사 기고 및 방송출연 등 젊은 세대에게는 찾아가는 홍보 적극 추진
 - 연예인 활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
 - 포털사이트 및 SNS 홍보
 -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홍보활동 강화
 - 지역별로 방송매체 및 홍보매체(인쇄물, 전광판 등) 활용
 -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SNS(페이스북·트위터 등) 적극 활용
 - 지하철,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LED, LCD 홍보 및 훈련 실황 방송 추진
 - ※ 훈련 전일 및 당일 훈련 안내·자막방송 송출 등
-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홍보활동 강화
 - 다문화 가정 및 이주근로자에 대한 훈련 집중홍보
 -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방문 등
 - 외국인에 대한 훈련홍보 강화(공항·호텔·외국인학교·대사관 등)
 - 장애인에게 훈련안내 및 참여를 위한 시청각 홍보물 제작 등

5 훈련 평가

- 훈련평가의 목적은 훈련체계의 미비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마련
- 훈련지표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단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포함
- 평가단은 훈련의 유형과 규모(훈련에 참가하는 기관 수, 장소, 목표 등)에 따라 구성

III

확인 및 협조사항

-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
- 기관장의 훈련 현장지휘 등 관심도 제고
- 훈련 협업체계 확립
- 엄정한 평가를 통한 포상
- 훈련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III | 확인 및 협조사항

■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

- 본 지침서를 적용하여 훈련계획 작성,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 추진

■ 기관장의 훈련 현장지휘 등 관심도 제고

- 시장·군수·구청장 주관하에 훈련기관·단체장 참여 보고회 개최
 - 훈련당일 기관장 훈련참여 및 참여기관 격려 등
- (사업장) 사업주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전점검회의·현장점검 추진

■ 훈련 협업체계 확립

- 훈련 T/F 운영으로 참여인력·장비 등 훈련자원 사전 확보, 훈련 시 기관(부서)별 임무와 역할 명확화
- (재난 대피훈련) 민방위부서와 재난부서 간 업무 분담으로 훈련 추진시 혼선 방지

■ 엄정한 평가를 통한 포상

- (행정안전부) 시·군·구 표본점검
 - 훈련 우수 지자체 및 기관은 포상 추진
 - 미흡기관은 개선계획 제출, 컨설팅 등 후속조치
- (시·도) 사전 지도 및 자체 점검반 운영
 - 시·군·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전 지도 및 훈련 당일 훈련실태 점검 실시

■ 훈련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훈련계획 수립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 사전회의 및 예행연습 등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 사전 차단 조치
- 주민·대원 임무·역할 부여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사전교육 시 사고 발생 후 절차(신청서 등) 안내

IV

1. 민방공 대피 훈련
2. 화재 대피 훈련





IV | 유형별 훈련 방법

1 민방공 대피훈련

■ 훈련 목표

- 경보발령 후 즉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시범훈련
- 접경지역 국지도발에 대비한 실제대피
-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전 국민 대상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습득
- 전시대비 훈련 목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

■ 훈련 개요

- (일시·지역) `00. 0. 00(0) 14:00~14:20(20분간), 전국 일원
- (훈련내용) 경보발령, 주민대피, 차량통제, 국민행동요령 교육
※ TV 생방송 및 라디오 실황중계를 통해 국민행동요령 안내
- (차량통제) 15분간(14:00~14:15, 공습경보 중) 실시(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운전자·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라디오)
※ 철도(KTX 등), 지하철, 항공기, 선박 정상운영, 병원 정상진료

■ 훈련 중점

-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등 공습상황에 대비, 국민의 대피요령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 실시
- 경보발령, 교통통제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 분위기 조성
- 주민불편 해소 및 자발적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홍보 강화

- 정부(입법부, 사법부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직장민방위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은 중점 통제
- 시·군·구별 각 1개소 이상 주민대피 시범훈련 실시
- 관공서 및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방호 훈련 실시
- 전국 소방관서, 군부대 훈련 참여
- 나머지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 주요 훈련 내용

〈 주민 대피훈련 〉

- ①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접경지역 제외 전 시·군·구)(붙임 3)
 - 시·군·구 별 각 1개 지역 이상 시범훈련 실시(지자체장 현장 지휘)
 -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되 충분한 사전홍보 실시
 - 공무원,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주민 등 인력 집중 투입
- ②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대피훈련(접경지역)(붙임 13)
 - 접경지역* 비상대피계획 내 포함 대피시설 대피 조치
 -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고성, 인제, 철원, 춘천, 양구, 화천)
 - 비상대피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하여 훈련 종료 후 보완
- ③ 청소년·영유아 대상 대피소 찾기 훈련(붙임 15)
 - 학생대상 대피훈련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 가족과 함께 집 근처 주민대피시설 위치 확인

〈 차량 및 주민 통제 〉

- ④ 차량 및 주민이동 통제(붙임 17)
 - 경찰 중심 차량통제 실시
 - 군, 공무원, 민방위대는 교통통제 지원
- 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붙임 18)
 - 한강교량, 기타 시·군·구 1개소 이상 선정
 - 군·경 합동검문소 운영을 통한 차량통제 실시
- ⑥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붙임 19)
 - 주요 도심지역(전국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왕복4차선 이상도로) 선정
 - 경찰, 소방·구급·복구(전기, 수도, 가스)차량 등 합동훈련 실시



〈화생방 대응훈련〉

⑦ 전국 관공서 중심 화생방 방호훈련(붙임 20)

- 전국 관공서, 직장민방위대 참여
- 방독면 휴대·대피, 핵 공격 대비 가정 내 밀폐요령 교육

■ 훈련 진행

- 민방위경보(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통해 훈련시작을 알리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를 전국적으로 실시
- 중앙통제 훈련 종료 후(14:20~15:00) 지역, 직장별 특성에 맞는 생활 안전 및 민방위 교육 자율적 실시

시간	경보	차량통제	주민통제	훈련내용	홍보
14:00~14:05	공습경보	차량통제 실시 (차량 내 라디오청취)	지하대피소 대피유도	〈주민 대피 훈련〉 ①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TV 생방송 (13:50 ~ 14:40)
14:05~14: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이동통제)	②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실제 대피훈련 ③ 초·중·고등학교 대상 대피훈련	
14:15~14:19	경계경보	차량통제 해제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해제)	〈차량 및 주민통제〉 ④ 주민이동 및 차량통제	각기관 SNS, 라디오 방송 (14:00 ~ 14:20)
14:19~14:20	경보해제			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 ⑥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화생방 대응 훈련〉 ⑦ 전국 관공서 중심 화생방 방호훈련	
14:21~15:00	-	-	자율	추가생활안전교육	-

■ 임무와 역할

훈련총괄	시·군·구		훈련주관	지역의 장		
적요범위	적의 침공 및 민방위사태를 가정한 대피 및 유도활동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시·군·구	민방위대장	대 원	유관기관
훈련준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 사전회의 개최(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사전교육(주민대피, 차량통제 요령, 안전사고 예방 대처법, 장비사용법 등) - 민방위 대피시설확인(위치, 개방 등) - 민방위 경보시설 확인 점검		훈련계획수립 순찰차량준비 교육 실시 훈련실행 훈련홍보	대원별 훈련책임 구역지정	사전교육 청취 대피유도 장소대기 (13:40~)	(경찰청) (군부대) (자원봉사단체) 사전회의 참석
경보발령	- 훈련경보:전국동시발령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 - 경보사이렌 취명상태 확인 및 미취명시 자체 취명실시		상황파악 및 대응활동 유관기관 상황전파	유도요원 배치지휘	책임구역 임무활동	상황유지 공조
주민대피 유도	- 인근 지정대피소로 유도 - 야외에 대피장소가 없을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 대피 - 주민대피통제(안전지역 대피유도)		훈련확인 및 점검 훈련상황 유지관리	책임구역 지휘·감독	주민보호 (대피, 소개, 낙오자 등) 유도활동	-
차량통제	- 최대한 도로 우측대피 원칙, 복열정차 유도 - 차내에서 라디오방송 청취 유도 - 비상차로 확보 - 훈련해제시 주민 및 차량이동 안전관리 대책 준비		주요도로 교통통제 지원 안전대책 강구 훈련해제시 안전대책 강구	책임구역 지휘·감독 훈련해제시 이동대책 추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차량통제	주요도로 교통통제 (군, 경)
대 피 소 교 육	- (14:05~14:20) 국민행동요령 - (14:20~15:00) 추가 교육		교육확인 교육실시	참여대원 집합유도	교육참여	교육강사 지원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
동원장비	기 본	민방위복, 완장, 모자, 호루라기, 교통차단 표지판, 등	훈련참여	지휘 통제	민방위대장 00명, 공무원 00명, 경찰 00명, 군 00명 등	
	전 문	민방위통제기, 교통신호봉, 전자메가폰, 방독면 등		대피 유도	000명(민방위대원00, 기타00)	



■ 훈련 통제(경찰, 군, 지자체, 중앙부처) 사업

- (경찰, 군) 주요도로 통제 및 주민대피 협조(경찰 집중배치 등)
- (지자체) 민방위대장 및 대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을 훈련유도요원으로 배치하여 대피 유도
- (사업장) 사업주가 훈련계획 수립, 대피유도요원을 배치·대피유도
- (중앙부처) 소속·산하기관, 관련업계·협회 등 참여 독려·점검
※ 교육부(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문화재청(문화재내 관람객), 고용노동부(사업장) 등

■ 훈련 실황방송(행정안전부)

- (TV) KBS 1TV 민방위훈련 특별 생방송(13:50~14:40)
※ 훈련소개, 국민행동요령안내, 훈련현장중계 등
- (라디오) KBS 주관 11개 방송사 연계 송출(14:00~14:20)

■ 훈련 사전홍보 및 준비(행정안전부, 각 기관)

- 훈련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집중홍보 실시
 - TV스팟 광고, 라디오 사전 안내방송(행정안전부)
 - 포털사이트, SNS 홍보(각 기관)
 -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건물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해당기관)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내방 민원인 국민행동요령 리플렛 제공(각 기관)
 - 교육시작 전 민방위 훈련 홍보 안내(공공기관 소속 교육원)
- 기관별 훈련계획 보도자료 배포(각 기관)

■ 각급 기관단체 협조사항

- 산하기관·단체 지도·지원 및 협조 강화
 - 민방위 대피훈련 시 입간판, 안내방송 등 훈련분위기 조성
- 민방위의 날 훈련과 중첩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일정 조정

■ 훈련 체크리스트(시·군·구용, 행안부 표본점검)

구분	실시내용	체크(O/X)
훈련 전	(훈련준비) 훈련 유관기관 협조, 비상연락망 정비, 훈련상황실 설치, 안전사고 예방계획(응급의료팀 협조) 등	
	(주민홍보) 반상회, 언론사, 방송사, 온라인 홍보, 가로기 설치, 훈련 안내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경보점검) 경보시스템(경보단말기, 마을앰프방송, 차량방송 등) 점검 경보단말 담당자 지정, 수동울림 매뉴얼 및 방송문안 비치	
	(대피시설 점검) 시설개폐유무, 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노후 퇴색 및 식별, 외국어 병행표기, 시설 주변 환경정비	
	(유도요원 사전교육 및 임무고지) 유도요원 확보 및 배치·운용계획 수립, 사전 임무고지, 사전교육 실시, 유도요원증 배부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관기관 협조상황 및 범위판단, 군부대, 경찰, 소방, 각종 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여부	
	(차량통제) 차량통제계획 및 통제요원 배치계획(경찰, 군 협조)	
	(대피유도요원 배치) 대피유도요원 배치 확인, 유도요원증 확인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담당구역지정 책임운영	
	(비상차로 확보) 통제요원 배치	
	(군경합동통제소 설치) 군경 합동으로 주요 도로에 통제소 설치	
	(초중고등학교 훈련 홍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훈련 알림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관리주체 훈련 알림 - 건물 내 대피계획 수립, 확인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 후 국민대상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계획 수립(심폐소생술, 핵 공격시 행동요령 포함)	
훈련 중	(경보발령) 경보발령(취명), 오작동시 대체수단(수동취명) 실시	
	(차량통제) 경찰 주관 비상차로 확보, 운전자·동승자 라디오 청취 안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주민대피) 대피소 대피유도 및 대피소 통제	
	(홍보) 훈련 상황을 기관 SNS를 통해 실시간 공유	
	(상황관리) 안전사고 대비 및 훈련 상황관리(상황실 ↔ 현장)	
훈련 후	(개선환류) 훈련평가, 문제점 원인분석, 홍보, 향후계획 반영	



붙임 1

부처별 책임 및 협조사항

기 관	협 조 사 항
전 기관 공통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포함)	○ 주민·직원·대원 중심의 실습체험형 민방위 훈련 추진 ○ 산하기관·단체·업체·협회에 대하여 훈련참가 독려 및 홍보 - 전 직장 입간판 설치 및 민방위기 게양(훈련 3일 전부터) ○ 범국민 훈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집중홍보 실시 -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훈련 안내방송 실시 등 ○ 각 기관별 비상대피계획에 따른 대피소 사전점검 ○ 사이렌 청취가 안 되는 경우, 자체 안내방송 실시(14:00) 및 훈련실시 ○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청사 외 자체청사(임차 등)인 경우, 자체 훈련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 ○ 각 소관기관 및 시설훈련 참여 유도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 치안계획의 실질적 가동, 주요도로 교통통제 협조 - 군 및 시·군·구와 협조, 교량 등 주요 교통통제소 운영 - 지정도로 구역에 경찰 집중배치, 담당제 운영 - 인력증원 배치 및 통제 ○ 시도경찰청, 경찰관서 단위로 교통통제계획 수립 - 차량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청 협조공문 발송
소 방 청	○ 시·군·구 및 공공기관 생활안전교육 강사 지원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정부청사별 대피계획 수립·시행 - 청사별 청사관리소 주관 층별 대피유도요원* 배치 * 입주기관 내 민방위대원 적극활용(배치장소 및 대피유도요령 사전교육) - 입주 기관별 대피장소 지정*, 훈련안내방송 실시 * 대피소 사전점검은 각 입주기관 별로 실시후, 해당기관내 공유하여 기관장 및 직원들이 대피훈련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관에서 훈련에 불참하는 인원이 없도록 점검 ○ 훈련시작 전 E/V 가동통제 ○ 사이렌 청취가 안 되는 경우, 자체 안내방송 실시(14:00~14:2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민방공 대피훈련 사전 홍보 및 훈련실황 협조 - TV자막방송 및 라디오 실황이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협조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방송 협조
문화체육 관 광 부	○ 전국 옥외전광판에 홍보영상 송출 협조 ○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방송(아리랑TV·라디오) 협조 ○ 각종 운동경기 및 공연 등 시간 조정 및 참여 협조안내 - 경보 및 실황방송을 관중에게 전파, 신속 대피 유도 - 유사시 대비하여 관람객 대피계획 수립 비치 ○ 외국인 관광객이 훈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리플렛, 안내방송 등 사전안내 실시 ○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 일정 조정 및 참여
문화재청	○ 고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 시간 조정, 방문객 신속 대피유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14:00~14:20)

I. 개 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 록

기 관	협 조 사 항
교 육 부 (교 육 청)	○ 유·초·중·고등학교 각급 학생들의 훈련참여 안내 - 학교에서 적용할 상황별 훈련매뉴얼 작성·시달 - 초·중·고 학생 “내 주변 대피소 찾기” 과제 부여 - 학교의 가정통신문, 집합교육 시 훈련 안내 - 학생대피를 위한 학교주변 근접 대피시설 활용 협조 ○ 각급 학교 훈련 참여계획 사전 파악, 훈련결과 취합 및 제출 ○ 학교의 훈련참여 실태 점검 ○ 학교운영계획에 ‘민방위시간’ 반영, 훈련 등 실시
국 방 부	○ 군 교통통제 실시 - 주요도로 교통통제 ○ 지역 군부대 참여 적극 협조(교통통제, 주민대피 시범훈련 등) ○ 국군방송을 통한 훈련홍보 실시
국토교통부	○ 각종 교통시설에서 훈련 안내방송 및 자막방송 실시 - 공항, KTX, 철도, 지하철, 버스 등 ○ 시내버스, 택시는 도로변 정차(승객은 차내에서 방송 청취) * KTX, 열차, 지하철, 선박, 항공기는 정상운행 ○ 관련 협회들을 통해 훈련 사실 알림 ○ 훈련시간 중 주차요금 면제 협조
보건복지부	○ 각급 의료기관·단체, 요식업소 등에 훈련안내 - 위생·보건 관련협회 협조요청 * 병원은 정상진료 ○ 각급 어린이집 훈련 참여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사전 훈련 협조 ○ 각 공단, 직장, 기업체 등의 대피훈련 적극 참여 유도
외 교 부	○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국내거주 자국민의 훈련참여 협조 - 경보발령은 훈련 상황임을 홍보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 대피시설 위치(영문표기) 안내 홍보
법 무 부 (출입국관리소)	○ 국내거주 외국인의 훈련참여 협조 ○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훈련 홍보
국회·지방의회 ·법원	○ 훈련 시간 중 회의 및 재판시간 조정 ○ 개회중이거나 재판 시에도 대피훈련 참여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사업장 훈련참여 독려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 안내



기 관	협 조 사 항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 훈련참여 관심도 제고 - 훈련계획 기관장 보고 및 중간 추진사항 점검 - 시범훈련현장 지휘
	○ 훈련 준비 및 실시사항 자체 점검반 운영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주민대피 홍보물 제작·배포 - 훈련 개요, 전시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 -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다중집합장소, 각 가정 등에 사전배포 - 민방위대원 등의 주민대피 유도활동 시 배포
	○ 민방위 경보시설 일제점검 - 경보 난청지역 차량방송 등 대체방안 강구 - 자동경보신호 미취명 시 현지 수동취명 조치
	○ APT단지, 건물별 민방위 훈련 안내방송 및 경보전달 - 건물 대표자에게 협조공문 발송 및 회의개최 - 건물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훈련참여 독려 및 점검
	○ 비상대피계획 및 대피시설 사전 점검 - 시설별 책임공무원 지정, 시설 사전점검 ※ 유도·안내표지, 비상등·방송시설 등 확인·정비 - 미흡사항 훈련 전 사전보완,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군부대, 경찰서, 소방관서, 학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구축 - 훈련관련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 군, 경찰, 소방, 자원봉사단체, 버스·택시조합 등
	○ (접경지역) 마을단위 비상대피 계획의 실제 가동 - 대피구역별 유도 책임자 지정 - 건물주(또는 사업장), 민방위대장(또는 안전관리자)은 경보에 따른 실제 대피 소요시간 측정, 민방공 대피 계획 및 매뉴얼 작성·보완 - 지역 및 직장 단위 대피장소 사전 구획 - 노상에서부터 대피소까지 대피유도요원 배치 - 대피소 내에도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질서 있는 대피 유도
	○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 확대 -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의 훈련참여 협조요청 - 2년차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 훈련참여 응소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통지 - 사전 활용계획 수립 및 인력 현장 배치

I. 개 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 록

기 관	조 사 항
지방자치 단 체	○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 지원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법대, 자율방재단, 적십자회 등 자원봉사조직 활용 - 자원봉사 조직의 인원 수 등 현황파악, 훈련참여 협조요청 - 담당공무원 지정, 배치장소 및 역할 교육
	○ 대피유도요원은 민방위 복제(민방위복, 조끼) 착용 - 기관별 가용예산(국고보조금 등)을 활용, 민방위 복제 적극 구입 - 민방위 복제 구입이 어려운 경우 완장, 어깨띠 등 활용
	○ 주민대피 유도활동 - 배치장소 및 대피유도요령 사전교육 실시(훈련 전) -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책임구역 지정, 현장 배치 - 주민대피 유도요원은 훈련 당일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및 유도활동 실시 -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사전교육 및 훈련시간) 인정 처리
	○ 지하철공사, 버스운송업체, 택시업체 등의 훈련참여 요청 - 관련 업체에 훈련참여 협조공문 발송 - 지하철(버스)내 홍보방송 실시 ※ 모든 운전자 및 승차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하도록 조치
	○ 가용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훈련홍보 실시 - 전 가정 및 직장을 대상으로 훈련참여 권유 독려 ※ 직장민방위대장,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 활용 - 홍보 유인물(라디오 주파수,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시설) 배포 및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 아파트 단지·상가 밀집지역 등 - 기관·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실시 - 지역방송매체에 훈련 홍보방송 협조요청 - 각급 민원실에서 민방공 대피훈련 알림판 운영 -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용 민방위기 달기



붙임 2

민방공 대피훈련 참여범위 및 행동요령

분야별	행 동 요 령
○ 국화·지방의회가 개최 중 일 때	○ 민방공대피훈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 개최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방송사 방송 중일 때	○ 라디오 훈련 실황방송은 방송사별 동시 전파 ○ TV방송사는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게 방송시간 조정 - 불가피한 방송인 경우 자막으로 민방공대피훈련 안내 등 홍보 ※ 연간 훈련일정 사전통보, 방송프로그램에 반영
○ 운동경기 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간조정 ※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경기 중이라도 대피훈련에 참여
○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일 때	○ 응급환자와 병상에 있는 환자는 실내 안전보호 ○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제외한 의사·보호자·기타 병원관계자는 참여
○ 학교수업 중일 때	○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대피소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윤번제 실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 등을 훈련 대피소로 활용 ○ 대피시간 중에는 민방위 및 생활안전 분야 교육 실시 ○ 14:00 전 하원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중 실시 ※ 세부내용은 학교훈련 분야 참조
○ 차량전용도로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 차량, 경찰, 소방, 구급, 응급복구차량 ○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 비상차로 훈련 차량	○ 미통제

I. 개 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 록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법원에서 재판중일 때 (사법부)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재판일정 조정 ○ 재판 중이라도 일시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 참여
○ 사무실 등에서 근무중인 직장·단체	○ 업무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요원을 제외한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 - 대피 후 민방위 및 생활안전분야 교육 실시
○ 직장·단체 등에서 회의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회의 일정 및 시간 사전 조정 ○ 회의와 집회 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전기·통신·소방· 의료기관	○ 소방·응급복구·긴급구조 장비 및 인원 적극 참여 ○ 훈련참여 직원 외 인원·장비는 비상대기
○ 위험물 취급업소 (염소·포스겐·가스업소 등)	○ 필수요원제외, 종사원 대피훈련 참여 ○ 직장·민방위대원 직장 사주경계 ○ 관련시설물 안전점검
○ 은행·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 일상업무 중단, 훈련참여 ○ 입·출금 중지 및 고객 안전대피
○ 다중이용시설 (호텔·터미널·백화점· 대형건물·위락시설 등)	○ 훈련기본원칙에 따라 건물지하나 가까운 대피소로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대표(업주)는 훈련실황방송을 청취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확보, 비상구 알리기 등 자체방송 ○ 훈련지도요원 집중배치(시·군·구, 직장)
○ 개인업소 (노래방·오락실·독서실· 목욕탕, 찜질방 등)	○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자체 안전점검 강화 (화재·유독가스 등 대비)
○ 문화재 또는 공원 등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14:00~14:20)



붙임 3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 훈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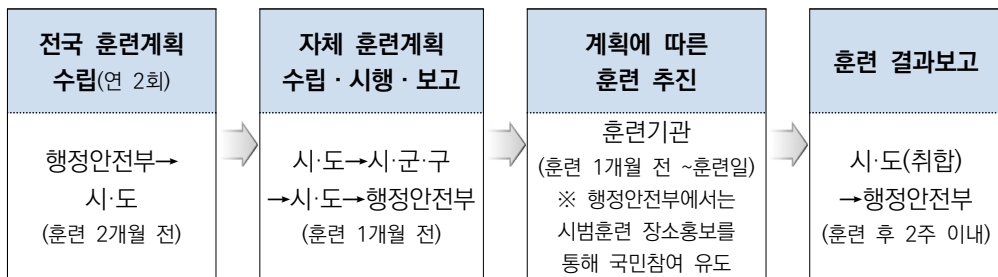
- **(훈련목적)** 공공용으로 지정된 주민대피시설 위치안내 및 홍보를 통해 유사 시 인근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 주민안전 확보 추진

※ 본 시범훈련 중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구를 표본점

- **(훈련대상)** 주요 사거리, 도심지역 대규모상가, 쇼핑몰 등 다중밀집장소 일대 등 중점대피구역 선정(시·군·구별 1~2개구역)

※ 접경지역 15개 시·군·구 제외

- **(훈련계획 수립·보고 일정)**



- **(훈련시간계획)**

시간	경보	주민통제
14:00~14:05	공습경보	지하대피소 대피유도
14:05~14: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이동금지)
14:15~14:19	경계경보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해제)
14:19~14:20	경보해제	
14:20~15:00	-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 훈련내용

〈 훈련 전 〉

- 시·군·구 지자체장 훈련 사전점검 및 현장 지휘
- 훈련지역(시설) 인근 대피시설 건물주 및 입주사, 주민 사전 협의
 - ※ 주민들의 실습·체험형 훈련이므로 담당공무원·훈련책임자·훈련참여자 등과 토의 및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범훈련 대상 대피시설 사전 점검(안내표지판 등)
- 대피시설 입구 및 통로에 압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유도요원(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사전교육(붙임 4), 임무편성(붙임 6), 배치(붙임 7, 13:40부터 대기)
 - ※ 유도요원증(임무카드) 지참(붙임 8)
- 국민대상 시범훈련(장소, 시간), 민방공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홍보
 - 주민대상 안전문자를 발송, 반상회, 보도자료 배포
 - 민방위대 및 안전 유관기관 등을 활용, 리플릿 등 배포
-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대피시범, 민방위 가로기 설치, 대피안내 등
- 주민, 관광객 등의 훈련 시간 안내를 위한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 훈련 중 〉

- 훈련경보 발령시 주민, 관광객 등을 주변대피소로 안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팀 대기 협조
- 대피 후 대피소 내에서 생활안전교육 실시(붙임 10), 리플릿(경보발령시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포함) 배포

〈 훈련 후 〉

- 국민 및 민방위대 대상 추가 생활안전교육 실시
 - 부스 운영 등 추가홍보, 실습체험 등 대체실시 가능(붙임 11)
-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처리(붙임 12)



붙임 4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요원 사전교육(안)

※ 훈련기관 및 임무, 여건에 맞게 변경

■ 개요

- (교육대상) 참여 민방위대원, 공무원, 자율봉사단 등
- 경찰에서 차량통제 교육도 병행 실시 가능

■ 교육 내용

- 훈련목적, 시간계획, 배치장소
- 소속 분대 및 임무
- 대피유도요령(건물, 도로) (붙임 9)
- 대피소 찾기, 경보시 행동요령
- 안전사고예방 유의사항(붙임 5) 및 안전사고 발생시 연락체계
- 분대별 임무 수행 및 장비 점검·사용법(붙임 6)
- 차량통제 시, 차내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 라디오 방송 청취제도
※ 안내를 위해 해당지역 라디오 주파수(FM/AM 00.0hz)도 사전 숙지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방법(장소, 시간)
- 교육시간 인정 절차

I. 개 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 록

붙임 5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훈련 전〉

- 훈련기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핫라인 등 협조체계 구축
 - 응급의료팀* 지원(훈련참가자들에게 장소 공유) 등 사전협의
 - *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 등
- 대피유도 요원 배치, 대피동선 및 출입구 분산 등 대책 마련
- 대피유도요원증 등에 사고시 연락할 안전책임자 등 연락처 기입
- 현장훈련 장소를 사전답사, 사전점검 및 훈련시 위험요소 제거
 - 대피경로에 있는 좁은 출입구, 계단, 급경사 통로가 있는 경우 추가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물로 안전공간·통로 확보
- (권장)훈련 참여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 민방위기본법 제29조에는 민방위대원들만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자 및 참여국민 등의 부상·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시·군·구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훈련 중〉

- 안전사고 발생시 사전 배치한 의료·안전요원을 통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후송 실시
- 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소방, 시도)와 행정안전부(민방위과)로 보고

〈훈련 후〉

- 사고 발생 여부 등 시도 보고(시·도는 행정안전부 보고)



붙임 6

분대별 임무 수행 및 장비(안)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지휘분대

- (임무) 총괄지휘(상황확인/설명/보고/종결), 유관기관 협조지원(연락체계 확인, 순찰, 대원관리)
- (장비) 앰프,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휴대용조명등, 무전기

현장분대

- (임무) 대피소 관리(대피소현황 파악, 주민대피 유도), 교통통제/대피통제
- (장비)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무전기, 호루라기, 폴리스라인

자원분대

- (임무) 대피소 내 질서유지, 물자지원(훈련 물자 확인 보급, 필요 장비 확인, 대피소내 비품 확인)
- (장비) 휴대용조명등, 무전기

구조분대

- (임무) 주민안내, 응급처치 지원
- (장비) 전자메가폰, 들것, 응급처치세트, 자동제세동기

■ 민방위 장비 사용법

구분	사진	사양(기본규격)
지휘용 앰 프		- 출 력 : 100W 이상 - 사용거리 : 100m 이상 - 전 원 : AC·DC 겸용(충전기능 포함) - 기 타 : 마이크 포함, 충전식으로 외부 활용 가능
		- 평시 축전지에 대한 충전을 완료하고, 정기점검 시 이를 확인 - 지휘용앰프에 마이크를 연결한 후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정하여 활용
전 자 메가폰		- 출 력 : 30W 이상 - 사용거리 : 50m 이상 - 전 원 : 건전지(고정형 충전식 건전지 금지) - 기 타 : 음성전달 및 사이렌 전파 기능 포함
		- 평시 건전지를 분리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정상작동 및 예비 건전지를 확인 - 어깨에 거치한 후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정한 후 확성기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활용 - 필요 시 사이렌 스위치를 "ON"하여 위험 상황을 주변에 전파
교 통 신호봉		- 발 광 부 : 50cm 이상 - 전 원 : 건전지(고정형 충전식 건전지 금지) - 기 타 : 점등, 점멸 기능(교통통제 가능 밝기 확보)
		- 평시 건전지를 분리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정상작동 및 예비 건전지를 확인 - 손목에 교통신호봉 고리를 착용하고, 점등 스위치를 조정하여 수신호로 장비 활용
환자용 들 것		- 재 질 : 철재, 알루미늄 등(목재 재질 확보 금지) - 하 중 : 100 KG 이상 - 기 타 : 낙상 방지용 안전장치(벨트 등) (보관 용이를 위해 접이식 확보 권장)
		- 평시 들것의 접이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접히는 부분이 녹슬지 않도록 관리 - 접이식 들것을 완전히 펼친 후 2인 또는 4인이 1조가 되어 환자를 눕혀 원하는 장소로 이송
응 급 처치함		- 구 성 품 : 응급처치 용품 및 보관함 - 상처 소독을 위한 소독제, 탈지면, 거즈, 핀셋 등 - 상처·화상 치료약 및 붕대(탄력붕대) - 골절 임시 조치를 위한 부목(권장) 및 탄력붕대 - 붕대 등의 절삭을 위한 가위 ※ 응급처치와 관련된 용품 구성 다양화 권장
		- 정기점검 시 구성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적기에 교체하여 관리 - 경상자에 대한 지혈 등의 응급처치(압박붕대, 소독제, 밴드 등) 시에 활용
휴대용 조명등		- 형 태 : 개인이 휴대 및 착용(머리) 가능한 형태 (야간 작업 및 구조 수색에 적합한 것) - 전 원 : 건전지(건전지 병용 가능 시 충전식 가능)
		- 평시 건전지를 분리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정상작동 및 예비 건전지를 확인 - 항시 전원 스위치로 수색·구조에 활용하여, 수신호 필요시 점등 스위치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



■ 민방위 장비 점검

- 점검일자 : 20
○ 점검시간 : . . . 시 . . . 부터 . . . 시 . . . 분까지

점검사항		점검자	관리책임자
○ 보관창고 습기, 도색 등 청결상태 ○ 장비 종류별 보유 현황판 관리상태 ○ 장비 종류별 구획보관 상태 ○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 교통 신호봉, 휴대용조명등의 건전지 관리상태(충전, 분리보관, 여유분, 유효기간 등) - 장비 작동상태 점검 포함 ○ 응급처치세트 구성품 손상실, 유효기간 도래 여부 ○ 환자용 들것 관리상태(펼침, 안전벨트, 조임끈 결박 등) ○ 기타 추가 확보 장비의 작동 및 관리상태 ○ 현수파악(전수점검 및 시효 만료 예정품 분류) - 장비 과부족에 따른 읍면동별 이관 및 조정 필요사항 검토 ○ 신속 불출 저해요소 파악 및 제거 - 불출 경로의 장애물 제거, 신속 불출을 위한 장비 포장단위 확인 등 ○ 기타 장비 보관·운영 안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등			
조치내용			
		○ 양호 / 미흡 - 조치사항 - 조치예정 사항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록

붙임 7

대피유도요원 배치(안)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 ○○건물 안전요원(공무원 ○○명, 민방위대원 ○○명 등)

※ 훈련 책임자 : 000(000-0000-0000)

위 치	동쪽계단	서쪽 1계단	서쪽 2계단	남쪽계단	북쪽계단	총 책임자
5층						
:						
1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 ○○건물 평면도(이동통로)

평면도	이동통로



붙임 8

대피유도요원증(임무카드) 양식

[앞면]

No. ○ ○ 읍 · 면 · 동 - ○ ○

소 속 : ○ ○ 읍 · 면 · 동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임을 증명함.

20 . . .

민방위마크

○ ○ 읍 · 면 · 동장 직인

※ 본 증명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만 사용

※ 지역 훈련유도요원은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장)
직장 훈련유도요원은 해당 기관장명으로 명시 및 직인

[뒷면]

○ 임무 :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 비상연락망 - 00 지구대 : - 00 소방서 : - 읍면동사무소 : - 민방위대장 : - 안전책임자 : ○ 배치도 - 현 위치(근무위치) - 유도구간 표시 - 중요 지형지물 명기 등 ※ 관내지도 복사 활용	○ ○	훈련전 ○ 훈련유도요원증 휴대 ○ 메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임무 숙지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훈련공습 경보 발령시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유도주민 및 차량 통제(14:00~14:15) - 인근 지정대피소로 대피유도 -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 - 비상차로 1차선 확보 - 최대한 도로우측으로 대피함을 원칙, 시범가로 구간내 운행차량은 도로요건,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한 복열정차 ○ 하차 미실시,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 청취계도 ※ 해당지역 라디오주파수: 00.0hz ○ 완전 대피유도 후 자신도 대피
		훈련경계 경보 발령시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대피주민 통행이나 보행토록 유도 ○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차량은 정상운행 안내
		경보 해제시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붙임 9

건물 내 주민 대피유도 요령(안)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 훈련 전

- 훈련유도요원 신분증 휴대
- 메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임무 숙지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및 유도활동 실시
-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지 조치

■ 공습경보 발령 시(주민 대피)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출구(계단)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도요원은 호각, 신호봉 등으로 대피자들을 통제하여 질서있게 대피유도
- 계단 또는 경사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승강기 사용 금지)
- 주민(국민)이 흥분하거나 대피를 거부할 시, 당사자를 진정시키고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책임자 연락 및 훈련취지 안내
-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국민은 유사시를 고려해 복도에서 휠체어를 미리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
- 피난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조용히 피난할 수 있도록 유지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훈련책임자 연락
- 각 층 유도요원은 계단으로 오는 대피자가 없을 경우 ① 해당 층내 유도요원끼리 소통, ② 훈련책임자에게 보고, ③ 담당구역 내 잔류자 확인, ④ 해당 층 책임자가 훈련책임자에게 최종보고·대피

■ 경보 해제 시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 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붙임 10

대피소 내 생활안전교육

■ 교육 대상

- (지자체 주관) 대피소 내 대피한 시민, 민방위대원 등
- (초·중·고 주관) 대피소 내 대피한 학생
- (사업장 및 관공서 주관)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및 사업주

■ 교육 과목

과목	교육 내용
필수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훈련준비 - 훈련 대상자 수에 적합한 교육용 모형(애니), 연습용 자동제세동기 확보 - 소방관, 전문교육강사 등 전문가 사전 확보 ○ 훈련절차: 전문가의 시범 → 실습훈련 실시 • 민방공 대피소 찾기, 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 핵공격 시 국민행동요령(가정 내 밀폐요령)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선택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필수 교육 및 해당 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선택하여 실시

■ 강사 운영

- 소방서(구조구급대원), 대한적십자사(응급처치강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위촉한 민방위 강사, 인근 군부대(화학부대원) 등 협조

붙임 11

실습체험 예시

※ 본 계획은 예시로서 민방위 제도안내 및 안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가능한 계획 수립

■ 메타버스 및 VR장비 활용 안전교육 실시(예시)

- 목적 : 실제와 같은 상황 조성과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및 재미 요소를 추가해 시민들의 학습 효과 및 교육 몰입도 제고
- 내용 : 첨단장비 활용, 주민대상 민방위 제도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 화재현장을 화면상에 실제처럼 구현하여 소화기의 사용법을 직접 실물을 활용해 익히는 3D 체험형 교육
 - 화면 속 응급환자를 실제 CPR모형과 연계,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하여 정확한 동작을 학습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험행사 실시 등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대상 : 미취학 아동(만 3세 이상),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 장소 : 공원, 학교, 공설운동장, 축제장 등(우천 시 실내)
- 주요내용 : 재난생활안전 등 분야별 종합 안전체험교육 실시
- 운영방법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 협력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붙임 12

민방위 훈련 참여자 민방위교육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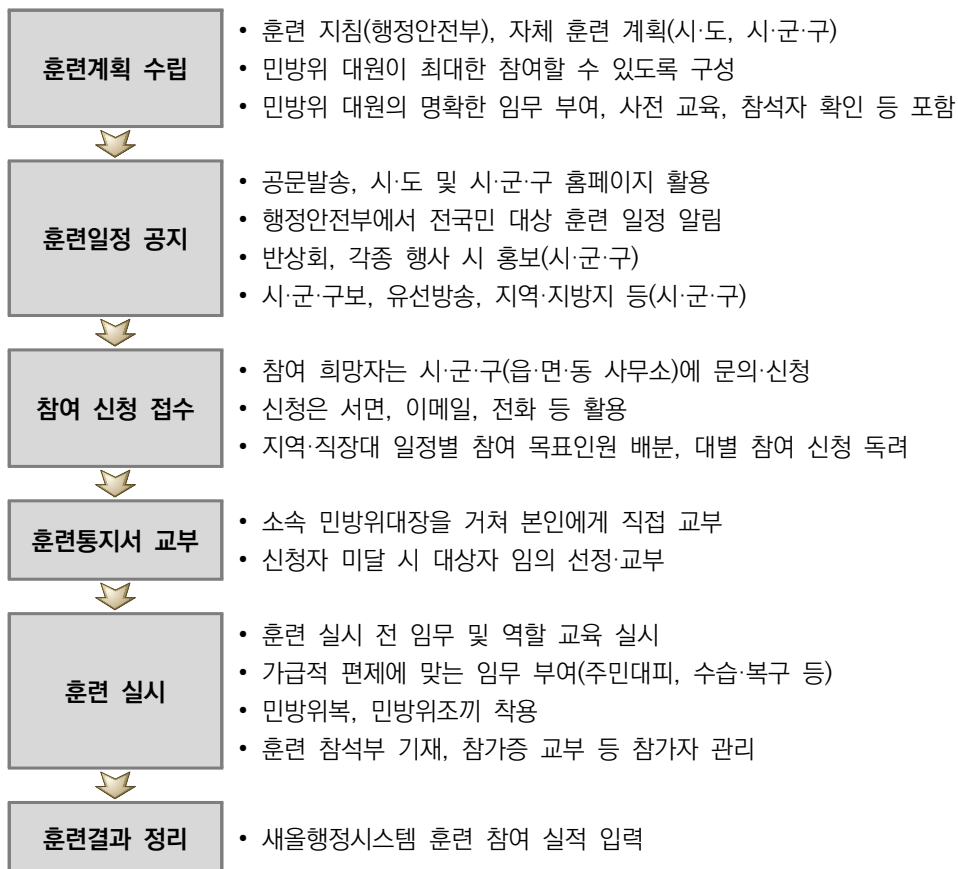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인정 대상

- 국민참여 민방위 대피훈련 시 대피유도요원 참여자
- 민방위사태대응 종합훈련, 시·군·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마을단위훈련, 직장·단체 자체 재난대비훈련 참여자

■ 인정 절차

- 훈련 실시 후 현장에서 참석확인서를 발부하고 교육이수 인정 조치



■ 인정 내용

- 훈련 참여자 연간교육 4시간 교육인정
 - 단, 직장·단체 자체훈련 참여대원은 시·군·구로 훈련계획 제출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여 인정한 대원에 한함
 - ※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는 현지확인 없이 시·군·구로 사전에 계획보고, 훈련 후 결과보고(7일 이내)시 인정
 - 해당연도 교육이수자는 교육의무 이수시간에 따라 차년도, 차차년도 교육이수 인정(최대 2년)



붙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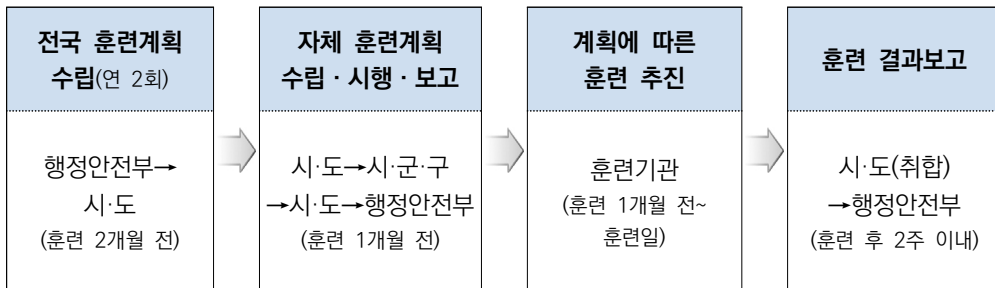
접경지역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실제 대피훈련

■ 훈련 개요

- (훈련 목적) 비상대피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훈련 종료 후 보완
- (훈련 대상) 비상대피계획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구 내 1개 이상 마을 선정하여 시범훈련 실시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고성, 인제, 철원, 춘천, 양구, 화천)

- (훈련계획 수립·보고 일정)



- (훈련시간계획)

시간	경보	주민통제
14:00~14:05	공습경보	지하대피소 대피유도
14:05~14: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이동금지)
14:15~14:19	경계경보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해제)
14:19~14:20	경보해제	
14:20~15:00	-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 훈련 내용

〈훈련 전〉

- 시·군·구 지자체장 훈련 사전점검 및 현장 지휘
- 시범훈련 대상 대피시설 사전 점검(붙임 14)
- 대피소 입구 및 통로에 압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유도요원(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사전교육(붙임 4), 임무편성(붙임 6), 배치(붙임 7, 13:40부터 대기)
 - ※ 유도요원증(임무카드) 지참(붙임 8)
- 국민대상 시범훈련(장소, 시간), 민방공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홍보
 - 주민대상 안전문자를 발송, 반상회, 보도자료 배포
 - 민방위대 및 안전 유관기관 등을 활용, 리플릿 등 배포
-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대피시범, 민방위 가로기 설치, 대피안내 등
- 주민, 관광객 등의 훈련 시간 안내를 위한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훈련 중〉

- 훈련경보 발령 시 주민, 관광객 등을 주변대피소로 안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팀 대기 협조
- 대피 후 대피소 내에서 생활안전교육 실시(붙임 10), 리플릿(경보발령 시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포함) 배포

〈훈련 후〉

- 국민 및 민방위대 대상 추가 생활안전교육 실시
 - 부스 운영 등 추가홍보, 실습체험 등 대체실시 가능(붙임 11)
-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처리(붙임 12)



붙임 14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점검표

■ 점 검 일 :

■ 점검대상 :

■ 점 검 관 :

* 시설관리담당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지적사항 (미흡 체크시)	비 고
시설 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정(시·군·구의 담당과장) - 부(읍·면·동의 장)	양호 ☐ 미흡 ☐		
	• 시설 열쇠 관리 적정 여부 - 관리/운영책임자, 당직자 보관여부 - 번호키 경우 비밀번호 변경여부	양호 ☐ 미흡 ☐		
	• 시설점검 및 관리 여부 - 주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양호 ☐ 미흡 ☐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시설관리카드, 권역별 시설위치도 비치 여부	양호 ☐ 미흡 ☐		
	•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여부 - 노후·퇴색 및 식별 여부 - 외국어 병행표기 여부	양호 ☐ 미흡 ☐		
	• 방폭문 등 시설 내부 관리상태	양호 ☐ 미흡 ☐		
	• 시설주변 환경정비 여부	양호 ☐ 미흡 ☐		
	• 시설현황 전산관리 - 위치정보(법정주소), 건물공식명칭, 대피공간 층수기입	양호 ☐ 미흡 ☐		서울행정 정보 시스템
	• 대피시설내 필수시설 여부 - 방폭문(방폭밸브류), 자가발전기, 화장실, 방송청취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계실, 주방시설, 창고, 샤워시설	양호 ☐ 미흡 ☐		
	• 비상발전기 등 부대시설 가동 여부	양호 ☐ 미흡 ☐		
	•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 주출입구, 비상탈출구 경사조절	양호 ☐ 미흡 ☐		
	• 기타 시설관리 부실 여부	양호 ☐ 미흡 ☐		

I. 개 요

II. 관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운영 방법

V. 부 록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지적사항 (미흡 체크시)	비 고
필수 비치 비품	· 비상용품함 비치 여부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개	양호 ☐ 미흡 ☐		수용인원 (명)
	· 비상용품 누락 여부 - 휴대용 도끼, 곡괭이, 삽, 정비공구(스패너, 망치), 전동드릴, 전기톱, 유압프레스 등	양호 ☐ 미흡 ☐		
	·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 전기 중단시 4시간 이상	양호 ☐ 미흡 ☐		
	· 주민대피용 방독면 비치 여부 - 대피가능인원당 1개 ※ 민방위대 방독면 비치 금지	양호 ☐ 미흡 ☐		보유수량 (개)
	· 응급처치비품 비치 여부 - 들것, 응급처치키트(삼각건, 부목, 지혈대, 압박붕대, 의료용테이프, 마이신계연고,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적정비치 ※ 100~200인 이상 대피시	양호 ☐ 미흡 ☐		
	· 장애인 편의물품 비치 여부 - 소관 지역 장애인 대피인구 고려	양호 ☐ 미흡 ☐		
	· 필수비치비품 유효기간 확인	양호 ☐ 미흡 ☐		
기타 사항	· 급수탱크 및 관정시설 설치 시 - 수처리제 (먹는물소독약) 필수 비치 여부	양호 ☐ 미흡 ☐		
	· 기타 세부설치 기준 미 달여부 - 주출입 (ㄱ, ㄴ자형) - 방폭문, 출입구 방호벽(50cm) - 바닥두께(30cm), 천장높이 (2.5m)	양호 ☐ 미흡 ☐		
	· 기타 민방위업무지침 준수 여부 - 시설 관리·운영 등 점검표 미표시 부분	양호 ☐ 미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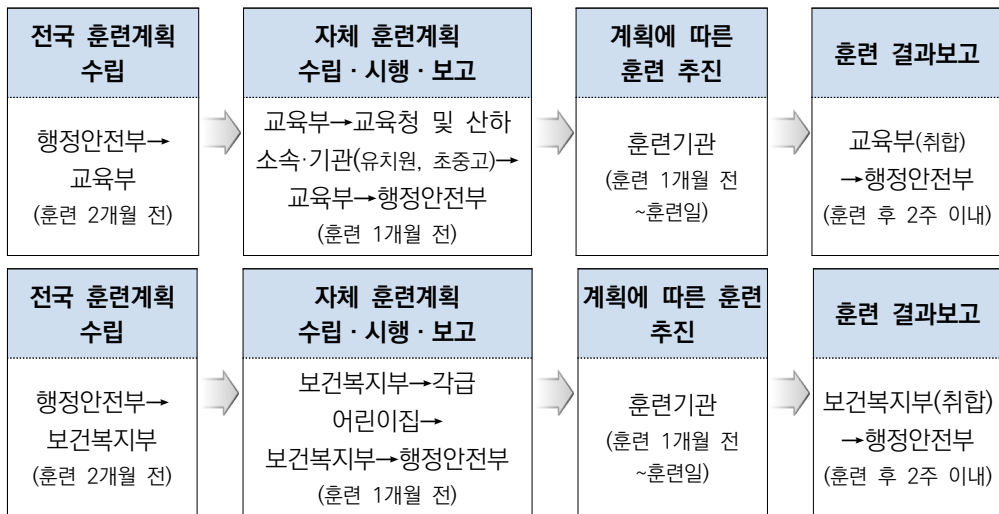


붙임 15

청소년 및 영유아 대상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 훈련 개요

- (훈련 목적) 공공용으로 지정된 주민대피시설 위치안내 및 대피 실습을 통해 교사 및 학생의 민방공 대응역량 강화
- (훈련 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어린이집
- (훈련 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시간계획)

시간	경보	대피
14:00~14:05	공습경보	지하대피소 또는 대피공간 대피유도
14:05~14: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찾기, 심폐소생술, 경보시 행동요령 필수*) *영유아는 해당연령대의 이해수준에 맞는 교육 실시
14:15~14:19	경계경보	
14:19~14:20	경보해제	
14:20~15:00	-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 훈련 방법

〈훈련 전〉

- 민방위 훈련을 학사운영계획에 반영
- 기관장이 훈련 사전점검 및 현장 지휘
- 훈련 전날 학생 대상 과제를 부여하여 가족과 함께 집 근처 및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근처 민방공 대피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대피시설 미흡 시 학교주변 근접 대피소 활용
※ 교내 활용가능한 대피공간: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 (근처 대피소 부재 시) 지자체와 대피장소로 지정협의, 학교 대피계획에 반영, 부득이한 경우 유리창 없는 지하 또는 1층 대기
- 학교와 대피소간 이동 경로 사전 확인
- 계단 등 이동로에 압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유도요원(교사 등) 임무편성(붙임 16), 사전교육, 배치(붙임 7, 13:40부터 대기)
※ 유도요원증(임무카드) 지참(붙임 16)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팀 대기 협조
- 학생과 교직원의 훈련 시간 안내를 위한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훈련 실시〉

- 경보 및 방송 전파
- 학생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내방송 실시
- 대피시설이 있는 학교 등은 대피시설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실제 대피훈련을 교대로 실시, 대피소가 없는 학교 등은 층별, 반별 대피계획에 의거, 1층까지 질서정연하게 대피,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
 - 유사시에 대비한 층별, 반별 대피계획과 지도교사 배치계획 및 안내방송문을 시나리오화하여 방송실에 상시 비치
- 대피시설 또는 1층으로 대피한 학생들에게 생활안전교육 실시(교실 내 영상시청 교육 대체 가능)
※ 부스 운영으로 훈련안내 및 홍보, 실습체험 등 대체실시 가능(붙임 11)



붙임 16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피훈련 자료

■ 조직구성 및 비상연락망

상황전파팀 긴급 연락처
000-0000-0000



- ❖ 기존 안전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 대피유도반은 층별, 구역별로 인원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구성할 것
- ❖ 학교장 판단 하에 유연하게 조직 운영 가능
- ❖ 연락처는 단축번호로 저장하여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권고함

■ 대피유도요원용 개인별 임무카드(예시, 휴대)

상황전파팀(장ㅇㅇ)		
☎방재팀:000-0000-0000 ☎소방서:000-0000-0000 ☎경찰서:000-0000-0000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무
기본	공통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방재	민방공 화재 지진·해일 폭설 붕괴 테러 침수 유해화학 물질유출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상황전파팀장 : 010-0000-0000		

대피유도팀(아ㅇㅇ)		
☎상황전파팀:000-0000-0000 ☎소방서:000-0000-0000 ☎경찰서:000-0000-0000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무
기본	공통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상황전파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대피 유도	민방공 화재 지진·해일 폭설 붕괴 테러 침수 유해화학 물질유출	1. ○○층 ○○구역 비상대피로 확보 2. ○○층 ○○구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로 대피 유도 ※ 대피유도장비 소지 3. ○○층 ○○구역 화장실 등 사각 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대피유도팀장 : 010-0000-0000		

현장대응팀(홍ㅇㅇ)		
☎상황전파팀:000-0000-0000 ☎소방서:000-0000-0000 ☎경찰서:000-0000-0000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무
기본	공통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상황전파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현장 대응	민방공 화재 테러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침수 가스누출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지진 폭설 붕괴	1. 대피유도팀/의료지원팀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현장대응팀장 : 010-0000-0000		

의료지원팀(김ㅇㅇ)		
☎상황전파팀:000-0000-0000 ☎소방서:000-0000-0000 ☎경찰서:000-0000-0000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무
기본	공통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상황전파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	민방공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유해화학 물질유출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의료지원팀장 : 010-0000-0000		



붙임 17

차량 및 주민 이동통제 훈련

- ◆ 차량통제 시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원)은 교통신호 또는 지시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권한 있는 자(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의 주관 하에 교통통제 훈련 실시

■ 훈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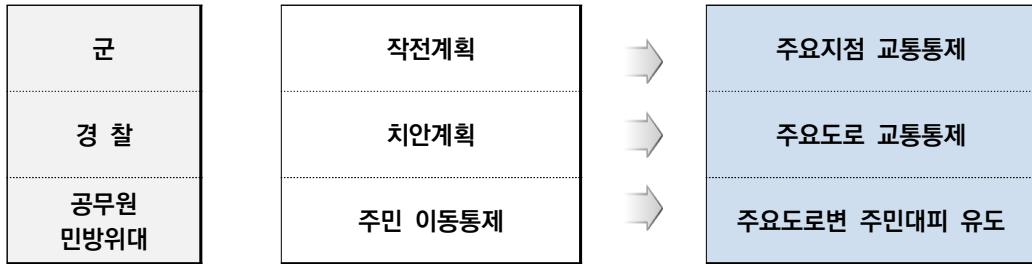
- (훈련 목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시 원활한 사태수습을 위한 교통통제 중요
- 운전자는 운행 중인 차량은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라디오 방송 청취
- (훈련시간계획)

시간	경보	차량통제	주민 이동통제
14:00~14:05	공습경보	차량통제	지하대피소 대피유도
14:05~14: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
14:15~14:19	경계경보	통제해제 (해제에 따른 급발진 등 안전사고 유의)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해제)
14:19~14:20	경보해제		
14:20~15:00	-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 훈련 대상

- (통제) 경찰, 군, 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 (참여) 통제대상 도로 내 차량 운행자 및 동승자

■ 훈련방법(경찰 중심)



※ 주요도로로 나오거나, 주요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가는 차량 통제

- 경찰의 전시 임무에 맞는 책임 있는 교통통제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교통통제계획 수립
 - 군작전·행정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비상차로 확보
 - 통제소 요원 및 통제장비 확보
- 군, 공무원, 민방위대는 경찰 요청에 따른 교통통제 지원
 - 국방부는 각 계획된 통제소에 군 병력 배치하여 경찰 교통통제 지원 및 군 작전로에서 기동훈련 실시
 - 공무원 및 민방위대는 경찰·군을 지원하여 도로변 주민대피 유도임무를 수행
-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교통신호등 통제없이 주요 교차로 등 교통경찰 등 교통통제 요원에 의한 차량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 긴급·훈련차량 이동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비상차로 확보(붙임 19)
 - 간선, 지선 등 주요도로(왕복 2차선 이상) 중심으로 실시
 - 왕복 2차선 도로 : 중앙선차도 확보
 - 왕복 4차선이상 도로 : 중앙 2차선 이상 확보
 - 비상차로 운행은 군작전차량, 응급구조·구급·복구차량, 교통통제차량, 훈련통제차량 등에 한정
- 군·경찰·공무원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교통통제훈련 시행



● 차량통제 훈련 제외

- 긴급사태로 출동 중인 군작전 차량, 경찰, 소방, 구급, 응급복구차량, 차량전용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정상운행(미통제)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 국민들의 훈련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운행중인 선박 등에서는 훈련방송을 전파하거나 훈련상황을 안내
 - ※ 단, 훈련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훈련계획으로 실시되는 통제훈련은 기관 간 사전 협의 및 대국민 홍보 후 시행가능(지하철 종합대피훈련 등)

● 민원 및 분쟁 예방

과거 분쟁사례

구분	일 시	장 소	사건 · 사고내용
서울	'10.11.15	동작구	민방공경보 상황중 통제 요원과 민원인간 다툼
부산	'13.8.21	강서구 공항로	일부차량 정차유도에 불응하며 주행
	'13년도	해운대로	교통통제시마다 의 및 불응 등 많은 애로 사항 발생
	매훈련시	서면교차로	일부차량 정차유도에 불응하며 주행
	'13.8.21	금정구 중앙대로	일부차량 정차유도에 불응하며 골목으로 돌아남
대구	'12.4.26	대구 남산동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제요원(통장)의 안내에 불응, 통제요원을 밀쳐 부상 발생
대전	'13.8.21	동구 홍도동	운전자가 교통통제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시 고성·폭언·욕설을 동반하여 경찰 출동 수습
충북	'13.5.8월	청주 일대	유도요원 제지를 무시한 사례 및 택시기사와의 잦은 마찰 발생
경남	'13.8.21	창원 구암동	통제요원이 지시한 곳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장소 정차를 위해 이동중 추돌사고 발생

- 대피유도요원 교육시 반드시 경찰 주관하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

붙임 18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

- ◆ 군 작전계획 및 경찰 치안계획에 따른 전시임무 위주훈련으로 주민차량통제와 아울러 군·경찰·공무원의 비상대비태세 강화 추진

■ 훈련 목적

- 통합방위예규에 의한 각급 통제소 실질적 가동

■ 훈련 대상

- 시·군·구 단위 전시 군·경 합동검문소 등 주요 교통통제소 운영지역
 - 군 작전계획에 따라 작전로 확보통제를 위해 작전로상에 위치한 주요검문소 운영
 - 치안계획에 따라 주요검문소 상 군·경찰 합동교통통제소 운영

■ 훈련 방법

-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과 연계하여 전시 교통통제소(교량 등) 주요 지점에 군·경 합동검문소 운영
 - 군·경찰 전시계획에 명시된 합동 교통통제소 점령, 바리케이드 등 설치, 차량통제 해제 후 훈련종료
- 긴급차량 이동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실시
 - 훈련목적에 맞게 통제소는 신축적으로 운영
 - 교통통제의 실질적 가동에 중점
 - 훈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
- 군·경찰·공무원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교통통제훈련 시행
- 경찰의 전시 임무에 맞게 전 지역 교통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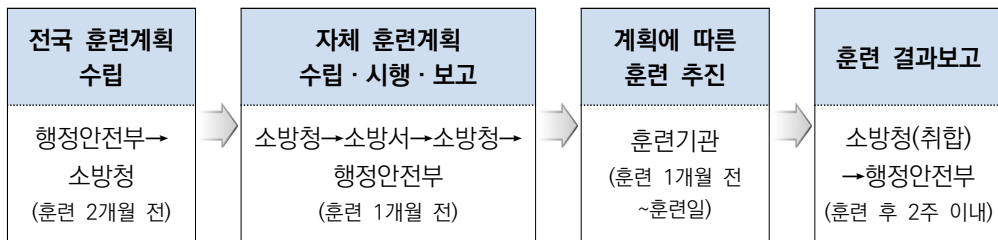


붙임 19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 훈련 개요

- **(훈련 목적)** 소방차량 및 훈련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와 양보운전의 중요성 및 방법 습득
 - 국민들의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를 훈련을 통해 재인식
- **(훈련 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 대상

- 전국 소방서별 1개 구간(상습정체구간, 왕복4차선 이상도로)

■ 훈련 방법

- 비상차로에서 계양용 민방위기를 걸고 비상차량단을 운행하여 민방위홍보 계도
- 이동 중에 비상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여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 집중홍보 및 양보운전 실제체험 유도
- 경찰, 소방·구급·복구(전기, 수도, 가스)차량 등 합동훈련 실시
- 경찰차량이 이동속도 및 차량통제 주도
 - ※ 차간 간격은 20m, 이동속도 시속 40km 이내
 - ※ 비상차로 확보훈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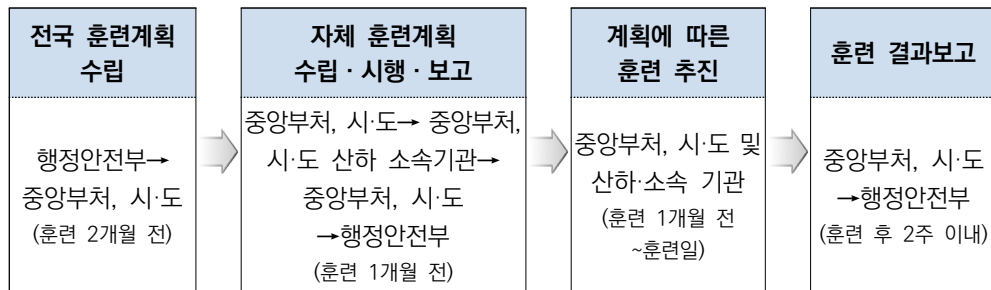
① 경찰차량		② 소방차량		③ 복구차량		④ 경찰차량	
선두 차량	교통 통제	펌프차	구급차	전기 복구차	수도 복구차	후미 차량	교통통제

붙임 20

전국 관공서 중심 화생방 방호훈련

■ 훈련 개요

- (대상) 훈련에 참여하는 전 관공서(면 지역 포함),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
- (훈련상황) 정부청사 등 관공서, 전 직장민방위대에 화생방 테러 등 발생 가정
- (훈련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시간계획)

시간	경보	대피
14:00~14:05	공습경보	지하대피소 또는 대피공간 대피유도
14:05~14: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찾기,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등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필수)
14:15~14:19	경계경보	
14:19~14:20	경보해제	
14:20~15:00	-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 훈련 조치사항

〈훈련 전〉

- 기관장 훈련 사전점검 및 현장 지휘
- 대피시설 사전 점검
- 대피소 입구 및 통로에 압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유도요원(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사전교육(붙임 4), 임무편성(붙임 6), 배치(붙임 7, 13:40부터 대기)
※ 유도요원증(임무카드) 지참(붙임 8)
- 기관내 직원대상 훈련 시간, 장소, 민방공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사전 교육 및 홍보(문자, 공문, 게시판, 엑스배너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훈련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점검관을 임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기관장 대피, 민방위 가로기 설치, 대피안내 등
- 민원인과 직원들의 훈련 시간 안내를 위한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훈련 중〉

- 전 직원 방독면을 휴대하고 대피소로 대피
※ 방독면 없을 시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
- 훈련경보 발령 시 직원, 민원인 등을 주변대피소로 안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팀 대기 협조
- 대피 후 대피소 내에서 경보 및 화생방 방호훈련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안전한TV 등 영상 자료 활용 가능
- 경보발령시 공무원 및 해당기관 특성에 맞는 직원 행동요령 교육
※ 비상소집, 문자발송, 주민대피유도 등 안내

- 생활안전교육과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법 및 대피공간 밀폐교육* 실시
 - * 출입구 및 창문, 환기구 등을 밀폐물자(비닐, 테이프, 형견, 천 등) 활용하여 밀폐·보호
- 리플릿(경보발령시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포함) 배포

〈 훈련 후 〉

- 대피유도요원으로 참여한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처리
- 직원, 민원인 대상 추가 생활안전교육 실시
 - 부스 운영 등 추가홍보, 실습체험 등 대체실시 가능(붙임 11)



참고 1

홍보현수막 및 입간판(안)

- ◆ 게시 주체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조합 등(훈련참여 전 기관)
- ◆ 게시 장소 : 주요 도로변, 상가, 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 글자모양, 색상, 규격 등은 설치장소 및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

■ 가로 현수막(안)



미리 알아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0000. 0.00(0), 14:00~14:20, ○○○○

기관
심별
마크

■ 세로 현수막, 입간판(안)



0000. 0.00(0)
14:00~14:20

미리 알아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점

III. 확인 및 연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록

참고 2

라디오 실황방송 계획

※ 세부 방송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0000. 0. 00.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훈련 공습 경보 (15분)	14:00:00	14:02:20	2분20초	공습경보발령 주민 및 차량이동통제 알림	민방위 경보통제소
	14:02:20	14:05:55	3분35초	훈련 주요내용 안내	행정안전부 (녹음)
	14:05:55	14:09:55	4분	훈련현장연결 (지자체 시범훈련 장소)	KBS-R
	14:09:55	14:12:05	2분10초	훈련 중요성 및 개선사항	행정안전부 전 문 가
	14:12:05	14:15:00	2분55초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전 문 가
훈련 경계 경보 (4분)	14:15:00	14:16:10	1분10초	경계경보발령 및 주민 및 차량이동 통제해제 알림	민방위 경보통제소
	14:16:10	14:17:50	1분40초	국가안보의 중요성	전 문 가
	14:17:50	14:19:00	1분10초	대국민 당부말씀	행정안전부
해제 (1분)	14:19:00	14:19:40	40초	훈련경보 해제	민방위 경보통제소
	14:19:40	14:20:00	20초	방송 종료	아나운서



참고 3

훈련 공습경보 실황방송(안)

(라디오)

〈공습경보발령〉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다음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은 후 지하 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다가 오후 2시 5분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노변 대피나 뒷골목 대피 등은 실제상황시 대단히 위험하오니 민방위대장, 훈련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모든 국민이 지하대피소로 실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며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4

훈련 경계경보 실행방송(안)

(라디오)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현재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공습경보를 훈련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공습경보를 훈련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실행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시간부로 차량 및 주민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5

훈련 경보해제 실황방송(안)

(라디오)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현재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 반복)

참고 6

앰프 사전 안내방송(안)

《 아파트·마을지역 안내방송 》

■ 3회(훈련 전날 19시, 훈련 당일 10시, 13시)

- 주민(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소(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0월00일(오늘) 오후2시부터 20분간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전 국민이 실제로 지하대피소로 대피해 봄으로써 적 공습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전국적으로 주민과 차량이동이 통제됩니다.
- 훈련공습경보 발령되면 놀라지마시고, 침착하게 가까운 민방공 대피소인 00장소로 대피해 주시고, 그 이후는 라디오(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청취하시면서 국민행동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 대피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택(자리)에서 라디오(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청취하시면서 국민행동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차량통제와 병행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니 소방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체·직장 안내방송 》

■ 3회(훈련 전날 19시, 훈련 당일 10시, 13시)

- 사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서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동일



참고 7

경보단말기·라디오 사전 안내방송(안)

《 경보단말기 안내방송 》

■ 3회(훈련 전날 19시, 훈련 당일 11시, 13시반)

- 오늘(0월00일) 오후 2시 민방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이동과 교통이 통제됩니다.
- 훈련공습경보 발령되면 놀라지마시고, 침착하게 가까운 민방공 대피소인 00장소로 대피해 주시고, 그 이후는 라디오(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청취하시면서 국민행동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차량통제와 병행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니 소방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라디오 안내방송 》

■ 3회(훈련 당일 10시, 13시)

- 이하 동일

참고 8

훈련 사전 안내 문자(시·군·구)

《 훈련 사전 안내문자 》

■ 훈련 전 7일 전부터 훈련 전일(14시), 훈련 당일(10시, 13시)

- [00시군구명] 0.00.(0) 14시 민방공 대피훈련 알림
- 오늘(0월00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이동과 교통이 통제됩니다.
-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놀라지마시고, 침착하게 가까운 민방공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고, 그 이후는 라디오(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청취하시면서 국민행동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차량통제와 병행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니 소방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번훈련을 통해 주변 대피소 위치와 전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링크 첨부)
- 아울러, 00시군구에서는 00장소를 대상으로 시범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오늘(0월00일)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9

지하철·열차 안내방송(안)

《 지하철·열차 및 역사 내 안내방송 》

■ 사전 안내방송

-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철도)공사에서 알려 드립니다.
- 0.00(오늘) 오후 2시 민방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주민이동통제가 15분간 이루어지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훈련경보 발령 시 방송

-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지금 민방위 훈련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FM, AM 00hz)를 청취하면서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훈련경보 해제 시 방송

-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지금 민방위 훈련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훈련 사전 자막방송 》

- 0. 00(오늘) 오후 2시 민방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 훈련경보 발령과 동시에 주민이동통제가 15분간 이루어지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FM, AM 00hz)를 청취하시면서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

라디오 실태방송 청취 주파수

KBS

지역	FM (제1R 표준)	AM (제1라디오)
서울,경기	97.3/90.3	711/756/1341
부산,경남	103.7	891
울산	90.7	1449
창원,마산,진해	91.7	1278
진주,사천,거창	90.3	1098/1584/927
대구,경북	101.3	738/1035/1503
안동,영주,영양,봉화	90.5	963/1233/1206
포항,경주	95.9	1323/1305
광주,전남	90.5	747/1323/1269
여수,순천	95.7	630
순천,광양		1485
목포,해남	105.9	1467
전주,전북	96.9	567/1368/540
남원	88.3	1260
대전,충남,천안,아산	94.7/89.9	882/540/1584
공주		1485/927
청주,옥천,청원	89.3	1062/945
충주,음성	92.1	621/1089/1584
춘천,가평	99.5	657/1026/846
강릉,속초	98.9	864/1044/675
태백	93.7	621
원주	97.1/95.5	1152
철원		1395
영월		783/1206/1233
속초		
제주,북제주,남제주,서귀포	99.1	963/621/1539

MBC

지역	FM	AM
서울	95.9	900
부산	95.9/106.5	1161
대구	96.5	810
광주	93.9	819
대전	92.5/91.3	765
전주	101.7/94.3	855
마산	98.9	990
춘천	92.3/88.9	774
청주	97.5	1297
제주	97.9/97.1	774
울산	97.5	846
강릉	96.3	1297
진주	91.1/93.5	1215
목포	89.1	1336
여수	100.3	1080
안동	100.1	1017
원주	102.5/92.7	1242
충주	96.1	1332
삼척	101.5/93.1	1350
포항	100.7	1107
울진	102.7	1107
울릉도	98.5	1107



2 화재 대피 훈련

■ 훈련목표

- 화재 대피 실전훈련을 통해 국민들의 대피요령 숙달
- 화재 대비 직장민방위대 등의 초기 대응능력 제고

■ 훈련 개요

- (일시·지역) 0000. 0. 00(0) 14:00~14:20(20분간), 전국 일원
- (훈련내용) 건물 내 경보방송, 주민대피, 국민행동요령 실습·교육
※ TV생방송, 라디오 실황을 통해 국민행동요령 안내, 사이렌 및 차량통제 미실시

■ 훈련 대상(공공기관 필수, 민간시설은 홍보를 통한 자율 참여)

※ 본 훈련 실시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훈련 실시로 인정

- 화재예방법 제39조 관련, 공공기관
 - 공무원, 임·직원, 교사, 교원(전 기관 필수)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 화재예방법 제20조의2 관련, 공항시설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해당장소에 근무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등(공공기관 관리 시설 필수)
- 화재예방법 제24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 해당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공공기관 관리 시설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관련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
 - 건설현장 작업자(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
 - 해당 사업장 근로자(공공기관 필수)
- 재난안전법 제34조의6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
 - 해당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공공기관 관리 시설 필수)
- 소방기본법 제17조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교직원, 유치원 유아·교직원(전 기관 필수)

■ 훈련 중점

- 화재발생에 대한 신고, 경보전파 절차 숙지
- 민방위대원 등 소화기 사용법, 대피유도요령 숙지
- 화재 시 긴급대피, 완강기 이용 비상탈출
- 화재진압, 인명구조활동, 응급복구, 사후정리 등
- 화재예방요령 및 사태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

■ 훈련 진행

시간	경보	주민통제	민방위대원 등	홍보
14:00~14:03	건물내 화재경보 및 신고	대피	(직장)대피유도 (지역)민방위대 동원	TV 생방송 (13:50~ 14:20)
14:03~14:05	-			
14:05~14:20		국민행동요령 교육	초기진화훈련 긴급 구조 및 후송 훈련	각 기관 SNS, 라디오방송 (14:00~ 14:20)
14:20		경보해제		
14:21~15:00	-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현장정리 및 강평	-



■ 주요 훈련 내용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붙임 3)〉

- 시·군·구 별 각 1개소 이상 시범훈련 실시(지자체장 현장 지휘)
 -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
 - 공무원,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인력 집중 투입
 - 해당 지역의 과거 화재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시설 유형 선정
- ① 재난안전법 제34조의6 관련, 다중이용시설(민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훈련 실시 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민간 다중이용 시설 참여 독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문화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매뉴얼 작성·관리, 주기적 훈련 의무 규정
 - 사전 훈련 안내를 통해 이용자 참여 유도 및 불편 최소화
 - 소방·방화 시설 및 장소별 대피 안내도 확인 등 안전 점검 실시
 -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제 대피 훈련 실시 후 매뉴얼 수정·보완
- ②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9조2 제1,2호 관련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
- *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보호자 지정(동반대피), 피난시설 운영 방침 등 대피 계획 수립
 - ※ 중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한 피난 대책 수립
 - 소방·방화 시설 작동 상태 확인 및 층별·장애유형별 대피 경로 점검
 - 자위소방대, 직원, 시설 관리자는 화재 역할 훈련 실시
 - 안전 취약 특성을 고려, 가상현실(VR), 웨어러블 기기, 점자 등을 활용한 교육 자료 제작·활용
 - 활동보호자, 직원, 간병인 등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사업장 대피훈련(붙임 16)〉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건설현장, PSM사업장 훈련안내, 독려

-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발전소 등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내 사업주, 근로자 등 필수참여
- 건설현장은 발주한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5호에 따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훈련을 이행·점검
- 발전사, 석유공사 등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른 비상대피계획에 따라 대피훈련 실시·자체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피훈련(붙임 17)〉

- 소방·방화 시설 상태 확인, 대피경로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점검
- 학생의 행동 패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대피 계획 수립
※ 대피 경로, 학년·반별 대피 순번 지정 등을 통해 일사불란한 대피 유도
- 자위소방대, 안전 관리자, 담당 교사의 화재 진압, 대피 유도, 학생 인솔 등 역할 수행 훈련 실시

〈전국 관공서 대피훈련(붙임 18)〉

- 소방·방화 시설 상태 확인, 대피경로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점검
- 자체 소방대피계획에 따른 직원들 대피훈련 실시
- 민원인과 함께 훈련하여 화재대피 역량 강화

〈공공기관 관리시설(붙임 19)〉

- 공항시설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서는 국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청소년 수련원 등 특정소방대상물 시설의 사전점검 및 사용자들과 훈련을 통하여 화재대응 교육효과 제고



■ 훈련 홍보

- 민방위훈련에 대한 실효성 인식 제고 및 국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추진
- 훈련 정보제공 및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 적극 강구·시행
 - 지역저명인사 기고 및 방송출연 등 주민의 자발적 훈련참여 유도(시·군·구)
 - 젊은 세대에게 찾아가는 홍보 적극 추진
 - 연예인 활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행정안전부, 각 기관)
 - 포털사이트 및 SNS 홍보(행정안전부, 각 기관)
 -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물 제작(행정안전부, 각 기관)
 -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현장홍보 강화
 - 다문화 가정 및 이주근로자에 대한 훈련홍보 강화(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등)
 - 외국인에 대한 대피훈련 홍보(공항·호텔·외국인학교·대사관 등)
 - 장애인 훈련 참여 보장을 위한 특성화 홍보 실시
 - 지하철,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LED, LCD 홍보(훈련 전일 및 당일 훈련 안내·자막방송 송출)

■ 각급 기관단체 협조사항(붙임 1, 2)

- 산하기관·단체 지도·지원 및 협조 강화
 - 민방위 대피훈련 시 입간판, 안내방송 등 훈련분위기 조성
- 민방위의 날 훈련과 중첩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일정 조정
- 각종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 훈련 체크리스트(시·군·구용, 행안부 표본점검)

구분	실시내용	체크(O/X)
훈련 전	(훈련준비) 훈련 유관기관 협조, 비상연락망 정비, 훈련상황실 설치, 안전사고 예방계획(응급의료팀 협조) 등	
	(주민홍보) 반상회, 언론사, 방송사, 온라인 홍보, 가로기 설치, 훈련 안내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훈련일시, 국민행동요령, 시범훈련 장소 등)	
	(경보점검) 해당 시설 경보시설 점검(유관기관)	
	(화재신고) 화재신고 훈련을 할 민방위대원, 건물관리자 교육(소방)	
	(대피로 및 대피소 점검) 대피로 내 적치물 제거, 환경정비 등	
	(유도요원 사전교육 및 임무고지) 유도요원 확보 및 배치·운용계획 수립, 사전 임무고지, 사전교육 실시, 유도요원증 배부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관기관 협조상황 및 범위판단, 군부대, 경찰, 소방, 각종 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여부	
	(차량통제) 시범훈련 시설 주변 차량 통제(경찰)	
	(대피유도요원 배치) 대피유도요원 배치 확인, 유도요원증 확인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담당구역지정 책임 운영	
	(초중고등학교 훈련 홍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훈련 알림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훈련 알림 - 건물 내 대피계획 수립, 확인	
훈련 중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 후 국민대상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계획 수립(심폐소생술, 화재대피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신고) 민방위대원, 건물관리자 등을 통한 화재신고 훈련 실시, 소방관 확인	
	(경보발령) 화재경보발령(취명), 오작동 시 대체수단(육성 등) 실시	
	(주민대피) 대피소 대피유도 및 대피소 통제	
	(홍보) 훈련 상황을 기관 SNS를 통해 실시간 공유	
훈련 후	(상황관리) 안전사고 대비 및 훈련 상황관리(상황실 ↔ 현장)	
	(개선환류) 훈련평가, 문제점 원인분석, 홍보, 향후계획 반영	



붙임 1

부처별 책임 및 협조사항

기 관	협 조 사 항
전 기관 공통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포함)	○ 주민·직원·대원 중심의 실습체험형 민방위 훈련 추진 ○ 산하기관·단체·업체·협회에 대하여 훈련참가 독려 및 홍보 - 전 직장 입간판 설치 및 민방위기 게양(훈련 3일전부터) ○ 범국민 훈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집중홍보 실시 -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훈련 안내방송 실시 등 ○ 각 기관별 소방대피계획에 따른 대피소 사전점검 ○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청사 외 자체청사(임차 등)인 경우,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및 자체 화재 경보방송 실시(14:00~14:03) ○ 각 소관기관 및 시설 훈련 참여 유도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 지자체 시범훈련 시설 근처 차량통제
소 방 청	○ 기관 및 시설에서 본 화재대피 훈련시 화재예방법에 따른 훈련실시로 인정 ○ 시·군·구 및 공공기관 훈련 지원 - 부상자 구조훈련, 생활안전교육 강사, 소방훈련 병행 실시 등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정부청사별 대피계획 수립·시행 - 청사별 청사관리소 주관 층별 대피유도요원* 배치 * 입주기관 내 민방위대원 적극활용(배치장소 및 대피유도요령 사전교육) - 입주 기관별 대피장소 지정*, 훈련안내방송 실시 * 대피소 사전점검은 각 입주기관 별로 실시후, 해당기관내 공유하여 기관장 및 직원들이 대피훈련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관에서 훈련에 불참하는 인원이 없도록 점검 ○ 훈련시작 전 E/V 가동통제 ○ 전 시설 자체 화재 경보방송(훈련) 실시(14:00~14:0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 민방위 대피훈련 사전 홍보 및 훈련실황 협조 - TV자막방송 및 라디오 실황이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협조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방송협조
문화체육 관광부	○ 전국 옥외전광판에 홍보영상 송출 협조 ○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방송(아리랑TV·라디오) 협조 ○ 각종 운동경기 및 공연 등 시간 조정 및 참여 협조안내 - 유사시 대비하여 관람객 대피계획 수립 비치 *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외국인 관광객이 훈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리플렛, 안내방송 등 사전안내 실시 ○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 일정 조정 및 참여
문화재청	○ 고궁 「수문장 교대의식」등 시간 조정, 방문객 신속 대피유도
환 경 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14:00~14:20)

I. 개 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 록

기 관	협 조 사 항
교 육 부 (교 육 청)	○ 유·초·중·고등학교 각급 학생들의 훈련참여 안내 - 학교에서 적용할 상황별 훈련매뉴얼 작성·시달 - 학교의 가정통신문, 집합교육 시 훈련 안내 ○ 각급 학교 훈련 참여계획 사전 파악, 훈련결과 취합 및 제출 ○ 학교의 훈련참여 실태 점검 ○ 학교운영계획에 '민방위시간' 반영, 훈련 등 실시
국 방 부	○ 지역 군부대 참여 적극 협조(지자체 살수차량 필요 시) ○ 국군방송을 통한 훈련홍보 실시
국토교통부	○ 각종 교통시설에서 훈련 안내방송 및 자막방송 실시 - 공항, KTX, 철도, 지하철, 버스 등 ○ 시내버스, 택시는 도로변 정차(승객은 차 내에서 방송 청취) * KTX, 열차, 지하철, 선박, 항공기는 정상운행 ○ 관련 협회들을 통해 훈련 사실 알림
보건복지부	○ 각급 의료기관·단체, 요식업소 등에 훈련 안내 - 위생·보건 관련협회 협조요청 * 병원은 정상진료 ○ 각급 어린이집 훈련 참여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사전 훈련 협조 ○ 각 공단, 직장, 기업체 등의 대피훈련 적극 참여 유도
외 교 부	○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국내거주 자국민의 훈련참여 협조 - 경보발령은 훈련 상황임을 홍보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 대피시설 위치(영문표기) 안내 홍보
법 무 부 (출입국관리소)	○ 국내거주 외국인의 훈련참여 협조 ○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훈련 홍보
국회·지방법원 ·법원	○ 훈련 시간 중 회의 및 재판시간 조정 ○ 개회중이거나 재판 시에도 대피훈련 참여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사업장 훈련참여 독려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 안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위주
국토안전관리원	○ (시·군·구 훈련 지원) 화재로 인한 붕괴 가능성 조사훈련
한국전력공사	○ (시·군·구 훈련 지원) 전기 복구훈련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군·구 훈련 지원) 가스 복구훈련



기 관	협 조 사 항
지방자치 단 체	○ 지방자치단체장 훈련참여 관심도 제고 - 훈련계획 기관장 보고 및 중간 추진사항 점검 - 시범훈련현장 지휘
	○ 훈련 준비 및 실시사항 자체 점검반 운영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주민대피 홍보물 제작·배포 - 훈련개요, 전시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 -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다중집합장소, 각 가정 등에 사전배포 - 민방위대원 등의 주민대피 유도활동 시 배포
	○ 건물별 화재대비 훈련 참여 안내 - 건물 대표자에게 협조공문 발송하여 훈련참여 독려
	○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 확대 -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의 훈련참여 협조요청 - 2년차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 훈련참여 응소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통지 - 사전 활용계획 수립 및 인력 현장 배치
	○ 가용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훈련홍보 실시 - 전 가정 및 직장을 대상으로 훈련참여 권유 독려 ※ 직장민방위대장,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 활용 - 홍보 유인물(라디오 주파수,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시설) 배포 및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 아파트 단지·상가 밀집지역 등 - 기관·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실시 - 지역방송매체에 훈련 홍보방송 협조요청 - 각급 민원실에서 화재 대피훈련 알림판 운영 -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용 민방위기 달기
	○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 지원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적십자회 등 자원봉사조직 활용 - 자원봉사 조직의 인원 수 등 현황파악, 훈련참여 협조요청 - 담당공무원 지정, 배치장소 및 역할 교육
	○ 대피유도요원은 민방위 복제(민방위복, 조끼) 착용 - 기관별 가용예산(국고보조금 등)을 활용, 민방위 복제 적극 구입 - 민방위 복제 구입이 어려운 경우 완장, 어깨띠 등 활용
	○ 주민대피 유도활동 - 배치장소 및 대피유도요령 사전교육 실시(훈련 전) -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책임구역 지정, 현장 배치 - 주민대피 유도요원은 훈련 당일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및 유도활동 실시 -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사전교육 및 훈련시간) 인정 처리

붙임 2

화재 대피훈련 참여범위 및 행동요령

분야별	행 동 요 령
○ 국회·지방의회가 개최 중 일 때	○ 민방위 대피훈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 개회 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방송사 방송 중일 때	○ 라디오 훈련 실황방송은 방송사별 동시 전파 ○ TV방송사는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게 방송시간 조정 - 불가피한 방송인 경우 자막으로 민방위 대피훈련 안내 등 홍보 ※ 연간 훈련일정 사전통보, 방송프로그램에 반영
○ 운동경기 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간조정 ※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경기중이라도 대피훈련에 참여
○ 학교수업 중일 때	○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대피소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윤번제 실제 대피 ○ 대피시간중에는 민방위 및 생활안전 분야 교육 실시 ○ 14:00 전 하원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중 실시 ※ 세부내용은 학교훈련 분야 참조
○ 법원에서 재판 중일 때 (사법부)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재판일정 조정 ○ 재판중이라도 일시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참여
○ 사무실 등에서 근무중인 직장·단체	○ 업무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요원을 제외한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 - 대피 후 민방위 및 생활안전분야 교육실시
○ 직장·단체 등에서 회의 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회의 일정 및 시간 사전 조정 ○ 회의와 집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은행·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 일상업무 중단, 훈련참여 ○ 입·출금 중지 및 고객 안전대피
○ 다중이용시설 (호텔·터미널·백화점· 대형건물·위락시설 등)	○ 직원, 고객 신속 대피 유도 ○ 대표(업주)는 화재경보를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 확보, 비상구 알리기 등 자체방송 실시 ○ 훈련지도요원 집중배치(시·군·구, 직장)
○ 개인업소(노래방·오락실· 독서실·목욕탕, 찜질방 등)	○ 종사원, 고객 신속 대피훈련 ○ 자체 안전점검 강화 (화재·유독가스 등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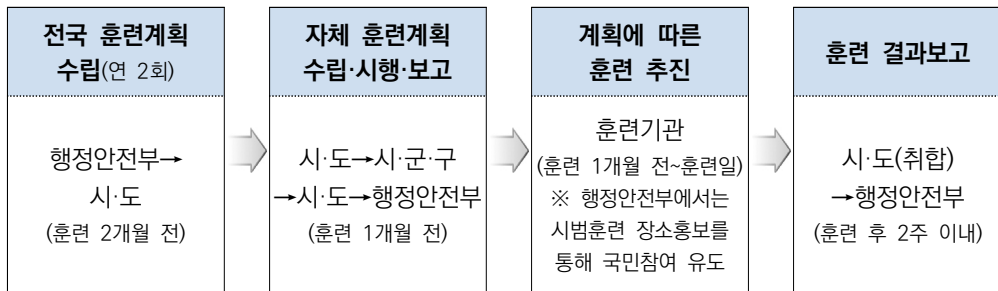
붙임 3

지자체 주민 화재대피 시범훈련

※ 주민들의 실습·체험형 훈련이므로 담당공무원·훈련책임자·훈련참여자 등과 토의 및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훈련 개요

- **(훈련목적)** 화재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 숙달 및 안전 교육 실습
 ※ 본 시범훈련 중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구를 표본점검
- **(훈련대상)** 시·군·구 별 1개소 이상 시범훈련 실시(지자체장 현장지휘)
 - 재난안전법 제34조의6 관련 다중이용시설(민간)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9조2 제1,2호 관련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
 *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훈련계획 수립·보고 일정)**



- **(훈련시간계획)**

※ ① 화재발생(메시지) → ② 건물 내 경보 발령 및 119 신고 → ③ 대피유도 → ④ 초기진화 및 주위 통제 → ⑤ 부상자 구조 → ⑥ 응급복구 → ⑦ 훈련 종료

시간	경보	민방위대원 등	유관기관	주민통제
14:00~14:03	② 건물 내 경보 발령	① 화재발생(메시지) ② 119 신고 ③ 대피유도	대기	③대피
14:03~14:10	-	④ 초기진화 (소방서에서 교육)	④ 건물통제(경찰)	국민행동요령 교육 (자율)추가 생활안전교육
14:10~14:19	-	⑤부상자 구조(지원)	⑤ 부상자구조(소방)	
14:19~14:20	경보해제		⑥ 응급복구 (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14:20~15:00	-			

■ 훈련 내용

〈훈련 전〉

□ 훈련준비 회의 개최

〈1차 준비회의〉

- 일시/장소 : 0000. 0. 0() /○○시설
- 주관 : ○○시군구(지자체장)
 - ※ 시군구청 훈련 사전점검 및 현장 지휘
- 훈련시설 인근 대피소 건물주 및 입주사 사전 협의
- 참석 : ○○시 훈련담당자, ○○시설 건물주 또는 관리자(소방안전), ○○시설 직장민방위대 담당자(들), ○○소방서, 주민 합동회의, 의용소방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 내용
 - 훈련 대상시설 선정 후 해당시설 내 비상대피계획 안내
 - 유관기관 역할토의
 -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 소방장비 점검(소방) 및 사용방법 숙달
 - 훈련반 편성 및 개인별 역할 분담
 - 각 기관별 직원 및 국민대상 홍보 및 교육강화 방안
 - 훈련시나리오 검토
 - 구역별 대피로 설정

〈2차 준비회의〉

- 일시/장소 : 0000. 0. 0() /○○시설
- 주관 : ○○시군구(지자체장)
- 참석 : ○○시 훈련담당자,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시설 직장민방위대 담당자(들), ○○소방서, 주민 합동회의, 의용소방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 내용
 - 훈련실시방법 교육 및 도상연습
 - 훈련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주의사항 홍보
 - 대피장소 내에서 실시할 교육 선정 및 강사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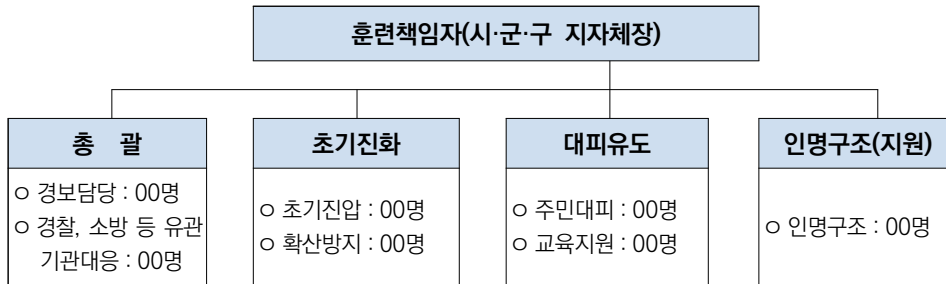
〈 회의자료(예시) 〉

① 훈련기관별 역할과 책임

- (주관기관) ○○ 시·군·구
 - 훈련 총괄, 계획 수립, 주민대피, 민방위대 동원, 지대본 가동 훈련
- (협업기관) 소방서, 경찰서, 수도·전기·가스 관련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 (역할) 현장 교통통제(경찰서), 구조·구급 훈련 및 타 기관 훈련 지원(소방서), 시설물 복구 훈련(수도·전기·가스) 등
 - 소관 분야별 훈련 인력, 장비 지원

② 개인별 임무와 역할 부여

- 훈련반 구성(00명)



- 훈련반별 대원편성

반 별	성 명	역 할	전화번호
총괄 ()		훈련책임자	
		비상연락담당	
		경보담당	
소화 ()		소화반장	
		소화 1반(지상 ○층)	
유도 ()		유도반장	
		유도 1반(건물 1층 대피유도)	
구조 ()		구조반장	
		구조 1반	

- 대피로 압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유도요원(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사전교육자료 (붙임 5), 임무편성(붙임 7), 배치(붙임 8, 13:40부터 대기)

③ 주민대피 및 환자 후송장소 지정

- 대피장소 : ○○근린공원, 피난안전구역, 옥상
 - 위치 : 훈련 예정 지역으로부터 ○○m 내에 있음
 - 각 장소별 수용가능인원 : ○○○여명
 - 각 장소별 대피인원 교육방법
- (훈련)환자 후송장소 : ○○병원
 - 위치 : 훈련예정지역에서 ○○○m의 거리에 있음

④ 훈련시나리오(붙임 4)

- 작성요령
 - 화재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작성
 - 시간대별, 사태 단계별로 작성
 - 시간, 사태상황, 제대·반원 행동요령, 행동 부연 설명 등
 - 사태전개가 논리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서술

⑤ 참여 훈련자들 내 연락체계

□ 참여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 대피로 압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유도요원(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사전교육자료 (붙임 5), 임무편성(붙임 7), 배치(붙임 8, 13:40부터 대기)
 - ※ 유도요원증(임무카드) 지참(붙임 9)

□ 훈련 홍보

- 국민대상 시범훈련(장소, 시간), 대피요령, 대피소 찾기 등 홍보
 - 주민대상 안전문자를 발송, 반상회, 보도자료 배포
 - 민방위대 및 안전 유관기관 등을 활용, 리플릿 등 배포
-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대피시범, 민방위 가로기 설치, 대피안내 등
- 주민, 관광객 등의 훈련 시간 안내를 위한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 훈련책임자 지휘아래 주민·대원이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참여자들의 협조와 참여 요청



< 훈련 중 >

① 화재발생 훈련메세지 부여(예시)

- 시·군·구 훈련담당자가 민방위대원에게 훈련 메세지 전달

※ 소방대원이 동행하여 접수한 민방위대원의 화재신고요령 확인

훈 련 : 제 1 호 00년 월 일 14:00
수 신 : ○○시설 민방위 훈련책임자 ○○○
제 목 : 화재발생
월 일 14:00 현재 ○○ 터미널 지하2층 LNG가스 인화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화염과 연기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수직 방향으로 확산 중임
신속한 주민 대피와 구조 및 화재진압이 필요함
○ ○ 시·군·구장

훈 련 : 제 1 호 00년 월 일 14:00
수 신 : ○○시설 민방위 훈련책임자 ○○○
제 목 : 화재발생
00년 00월 0일 00백화점 지하에서 산소용접기로 가스배관 절단작업 중 LNG 가스가 차단되지 않아 절단기 불꽃에 배관 내 가스가 인화, 지하층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되어 화재진압 및 건물 내 긴급 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임.
○ ○ 시장

② 건물 내 경보 발령 및 화재 신고

- 화재경보 발령(훈련책임자)

- 접수한 민방위대원이 건물 경보담당자, 수동 화재경보기 전파,소방서에 신고*

* 관할 소방서에 화재발생 사실 신고절차 훈련 실시, 실제 전화는 하지않고, 옆에서 소방대원이 확인하고 접수, 소방서에서 점화원, 가연물, 발화장소, 연소상황, 피난상황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

- (건물 경보담당자) 건물 내 방송을 이용하여 사태전파

고객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훈련상황입니다. 금일 2시 현재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고객 여러분께서 침착하게 비상구를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회 반복)

- (수동 화재경보기 전파대원) 건물 내 수동 화재경보기를 활용
 - 반드시 훈련상황임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혼란이나 안전사고 방지
- ※ 각 층에 민방위대원을 유도요원으로 배치

● 화재신고

-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은 소방서에 전파
- 소방서에서 시·군·구로 전파
- 시·군·구는 경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단체로 전파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 민방위대 동원훈련 실시

③ 대피유도(건물 내 대피유도반)

● 대피는 경보와 동시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훈련

- 건물 내 직장민방위대, 자위소방대 등 **모든 요원들이** 대피 유도

※ 지휘반은 상황전파, 나머지 소화반, 유도반, 구조반은 전부 대피유도

- ① 대피종료 후 지휘반은 유관기관 협조확인 및 다른 반 훈련상황 확인
- ② 소화반은 초기진화 훈련 실시
- ③ 유도반은 대피장소로 이동한 주민 대상 교육·훈련 실시
- ④ 구조반은 긴급구조 및 후송 훈련 실시

· 층별 유도반장의 지휘·감독아래 안전하게 주민대피 유도

· 건물 내 유도반은 1층, 피난안전구역, 옥상으로 대피 유도

※ 해당 건물의 비상(화재)대피계획에 따름

· 건물 내 유도반원들은 노약자나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등의 비상대피를 도와줌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대피

· 유도반장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주민 전체를 총괄유도

● 대피훈련 시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교육

- 옥상으로 대피하는 주민대상 완강기 활용 방법 교육

④ 초기진화 및 주위통제

● 소화반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 자위소방대 등은 초기 화재진압 조치 훈련으로 실제 소화전과 연습용 소화기를 사용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초동적 진화에 치중하고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위험한 경우 현장에서 대피
- 가연물 종류별 화재 특성 및 진압방법 교육 실시

● (경찰) 주민출입통제 출입선 설정

- 지휘반 민방위대원은 경찰 도착시 현재 상황 보고
- 훈련 대상 외 주민 출입통제
- 구급차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차량통제 병행



⑤ 지역·지원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대 동원은 시·군·구에서 소방으로부터 상황접수 후 바로 실시
 - 동원규모는 화재규모, 예상되는 피해에 따라 시·군·구에서 정함
 - 비상연락 담당자가 개인별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전화, 핸드폰 등으로 지역 민방위대원 소집 독려
 - 민방위대원들은 사전교육, 장비 점검 등 대비 태세 완비
 - ※ 유도요원증(임무카드) 지참(붙임 9)
- 동원된 지역·지원민방위대원은 1층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사전에 설정한 대피장소(00근린공원 등)으로 대피시키고, 건물 내 민방위대원 등 부족한 반 지원
 - 지휘반 대원은 지역·지원민방위대(장)원 도착시 현재 상황공유

⑥ 긴급구조 및 후송

- 소방서는 접수 즉시 출동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에서 대기하더라도 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소방관 투입조치 및 구조훈련 실시
 - 지휘반 민방위대원은 소방 도착시 현재 상황 보고
- 구조반 민방위 대원 등은 구조·응급조치를 위한 송기마스크, 붕대법, 환자이송법, 심폐소생술, 들것 사용법 사전교육 및 숙달
 -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을 가정, 구조반 민방위대원 등은 구조 가능한 범위에서 훈련 실시
- 훈련 효과를 위한 부상자 역할 주민 사전 선정
- 부상자 역할 주민 후송시 앰불런스에 타는 것까지 훈련

⑦ 응급복구

- 각 유관기관에서는 접수 즉시 출동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에서 대기하더라도 출동시간을 고려하여 투입조치·응급복구 훈련 실시
 - 지휘반 민방위대원은 유관기관 도착시 현재 상황 보고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연소 잔해 및 낙하위험물 제거, 가스공급 차단 등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가스 등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복구 훈련 실시
 - (국토안전관리원) 화재 피해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훈련 후〉

⑧ 현장정리 및 훈련종료

- 훈련장 주변정리
 - 훈련책임자의 지휘아래 훈련장 주변에 대해서 철저한 정리정돈
 - 각종 민방위용 장비를 정비 및 정리하여 보관장소에 보관
- 강평 및 주민토의
 - 시·군·구 주관으로 훈련과정 상 미비점과 잘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민, 참관인 및 담당공무원간 토의
- 훈련참여자 격려 등
 - 시·군·구장이 훈련참여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표시 및 민방위 대비태세의 중요성 강조



■ 임무와 역할

훈 련 총 괄	시·군·구청장		훈련주관	지역 또는 직장의 장		
적 용 범 위	화재 발생으로 인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역량 강화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자치구 주관부서	민방위대장	대원 등	유관기관
훈 련 준 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및 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교육 · 대피유도요령 ·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취약지 예찰활동 요령 · 상황파악 및 초동조치 요령 · 민방위 장비 및 소화기 사용법 - 대피장소 확인, 점검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팀 대기 등 특별대책 강구		계획수립 장비준비 교육실시 훈련홍보	대원별 훈련책임 구역지정	사전교육 책임구역 대기(13:40)	동원장비 협조
경 보 발 령 및 신 고	- 화재발생 위치, 규모, 상황 등 신고(훈련) - 화재발생경보 발령(건물/경보3분)		경보발령 유관기관 상황전파	훈련인력 배치·지휘	훈련참여	긴급출동
긴 급 대 피	- 안전한 지역으로 주민(직원) 대피유도 - 화재경보 발령과 동시 긴급대피 -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교육 - 출입통제선 설치, 차량통제 등		훈련점검 훈련상황 유지관리	훈련참여 지휘·감독	주민, 직원 대피유도	출입통제선 설치, 차량통제 (경찰)
긴 급 구 조 복 구 활 동	- 피해상황접수 및 유관기관단체 지원요청 - 전기, 가스 복구(유관기관 협조시) -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활동(소방)		사태발생 보고 및 지원요청 유관기관 합동, 복구 구조 활동	유관기관 복구 및 인명구조 지원내용 확인	유관기관 복구 및 인명구조 지원(필요시)	전기복구 가스복구 인명구조
대 피 소 교육	- (14:05~14:20) 국민행동요령 - (14:20~15:00) 추가 교육		교육실시	유관기관 복구 및 인명구조 지원내용 확인	유관기관 복구 및 인명구조 지원(필요시)	교육강사 지원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 훈련에 동원된 장비 반납 - 훈련 지역주변 정리정돈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지원장비 정리정돈
동 원 장 비	기 본	소화기, 소화전, 물통, 들것, 확성기 등	훈련참여	지휘통제	00명(기관장, 민방위대장 등)	
	전 문	소방차, 구급차, 완강기, 송기마스크, 화재용 방독면		대피유도 긴급복구	00명(민방위대원100, 기타00)	

붙임 4

훈련 시나리오(예시)

※ ① 화재발생(메시지) → ② 건물 내 경보 발령 및 화재신고 → ③ 대피유도 → ④ 초기진화 및 주위통제
→ ⑤ 부상자 구조 → ⑥ 응급복구 → ⑦ 훈련 종료

상 황	행 동 요 령	내 용
화재발생 (메시지)	① 시·군·구 훈련담당자가 민방위대원에게 훈련 메시지 전달	메시지(안) ① 00월00일 14:00 현재 ○○터미널 지하2층 LNG가스 인화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화염과 연기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수직 방향으로 확산 중임, 신속한 주민 대피와 구조 및 화재진압이 필요함 ② 00년 00월 0일 00백화점 지하에서 산소용접기로 가스배관 절단작업 중 LNG 가스가 차단되지 않아 절단기 불꽃에 배관 내 가스가 인화, 지하층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되어 화재진압 및 건물 내 긴급 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임.
경보발령 및 신고	① 접수대원:건물 경보담당자전달, 수동 화재경보기, 소방서 화재발생 신고 ② 경보전달자 경보발령 ③ 소방대원1 : 옆에서 신고내용 접수	① 사태전파 및 소방서 화재발생 신고 ② 경보담당자 경보:(예시) ○○ 건물에서 알립니다. ○○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옥상이나 창문가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는 대피유도장비 등을 갖추고 지정된 대피유도장소에 위치하여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2회 반복)
소방신고접수 및 시·군·구 상황전파	① 소방대원1 : 전달체계에 따라 시·군·구 전달 ② 시·군·구 : 상황접수 및 읍·면·동 전파, 민방위대 동원, 유관기관 연락	② 유관기관 : 경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지역·지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① 주민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대장이 먼저 도착 ② 민방위대장 : 소집되는 대원으로 긴급반을 편성, 현장 지휘, 대피유도 실시	② ○○통 민방위대원 현장도착, 응소하지 못한 대원들에게 비상연락망으로 핸드폰 등으로 연락하여 응소 독려(훈련)
대피유도	① 건물 내 직장민방위대 등 담당구역에서 대피유도 ② 지역민방위대는 1층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유도	① 건물 내 직장민방위대 등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담당구역에서 가까운 대피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1층, 피난안전구역, 옥상 등) ② 지역민방위대는 1층에 대피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출입통제선 설치	① 경찰 : 화재현장 접근 통제, 주변지역 교통정리, ② 소방로 확보	① (경찰)화재현장 접근 통제 및 교통정리 ① (경찰)주민통제출입선 설정 ② (민방위대 등)소방로 확보를 위해 주택가 주차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치우도록 조치



상 황	행 동 요 령	내 용
환자발생	① 구조 1반: 환자 구출 및 응급 처치, 들것을 이용, 환자이송 ② 구조 2반: 앰بول런스까지 후송	① 건물 2층 비상계단으로 대피중인 주민이 연기로 인해 발을 헛디뎈 다리골절상 상황발생 ② 구조반이 출동하여 환자를 비상계단에서 신속히 구출, 응급처치 실시후 들것을 이용하여 대기 중인 앰بول런스로 후송
소방차 현장 도착	① 대피 2반: 소방차 및 구급차 현장안내	① 대피유도 2반은 소방차, 구급차 현장진입 유도안내 및 교통통제 실시 ② 사다리차, 펌프차를 이용하여 화재 확산방지 조치 및 화재진화 활동 전개
119구조대 도착 (부상자 구조)	① 구조반 : 119구조대원과 함께 들것 하강 구조(지원)	① 구조반에 의해 주민들이 완강기 이용 구조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상중인 구조요청자 ○명을 119구조대가 들것하강 구조활동을 전개 ② 현장 응급조치후 대피구역까지 후송
화재진압완료 (소방)	① 소화 1반 : 옥내소화전으로 진화활동 계속 ② 소화 2반 : 소방대원 진화 활동 보조	① 소방차량 집중방수로 화재를 완전히 진화
응급복구 및 안전진단	각 유관기관에서 응급복구를 위한 훈련 실시	각 기관의 화재대응매뉴얼에 따름
강평 및 훈련종료	훈련참여자 전원 00장소 집합	① 훈련전반에 대해서 강평 및 격려 - 훈련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1. 개요

II. 훈련 실행지점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평가

붙임 5

훈련참여자 사전교육(안)

※ 훈련기관 및 임무, 여건에 맞게 변경

I 개요

- (교육대상) 참여 민방위대원, 공무원, 자율봉사단 등
- 경찰에서 주민통제 교육도 병행 실시 가능

I 교육 내용

- 훈련목적, 시간계획, 배치장소
- 소속 반 및 임무
- 대피유도요령(건물 내) (붙임 10)
- 안전사고예방 유의사항(붙임 6)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체계
- 반별 임무 수행 및 장비 사용·점검법(붙임 7)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방법(장소, 시간)
- 교육시간 인정 절차(붙임 13)
- 훈련참여자 내 연락체계
- 화재별 특성 및 소화방법(붙임 14)
- 건물특성 별 화재특성(붙임 15)



붙임 6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훈련 전〉

- 훈련기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핫라인 등 협조체계 구축
 - 응급의료팀* 지원(훈련참가자들에게 장소 공유) 등 사전협의
 - *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 등
- 대피유도 요원 배치, 대피동선 및 출입구 분산 등 대책 마련
- 대피유도요원증 등에 사고시 연락할 안전책임자 등 연락처 기입
- 현장훈련 장소를 사전답사, 사전점검 및 훈련시 위험요소 제거
 - 대피경로에 있는 좁은 출입구, 계단, 급경사 통로가 있는 경우 추가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물로 안전공간·통로 확보
- (권장) 훈련 참여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 민방위기본법 제29조에는 민방위대원들만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자 및 참여국민 등의 부상·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시·군·구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훈련 중〉

- 안전사고 발생시 사전 배치한 의료·안전요원을 통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후송 실시
- 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소방, 시도)와 행정안전부(민방위과)로 보고

〈훈련 후〉

- 사고 발생여부 등 시도 보고(시도는 행정안전부 보고)

붙임 7

반별 임무 수행 및 장비(안)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 지휘반

- (임무) 상황전파, 초동조치, 연락체계 확인, 순찰, 대원관리, 장비분배
* 지휘반은 타 반 및 소방 등과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
- (장비) 앰프,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휴대용조명등

■ 소화반

- (임무) 초동진화, 소방차진입도로 확보, 교통통제 지원
- (장비) 화재 대비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무전기, 소화기

■ 유도반

- (임무) 주민대피 유도, 연락체계 확인, 대원관리
- (장비) 휴대용조명등, 무전기

■ 구조반

- (임무) 응급처치 지원, 부상자 관찰, 부상자 후송 지원
- (장비) 들것, 응급처치세트,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 민방위 장비 사용법

구분	사진	사양(기본규격)
지휘용 앰프		- 출 력 : 100W 이상 - 사용거리 : 100m 이상 - 전 원 : AC·DC 겸용(충전기능 포함) - 기 타 : 마이크 포함, 충전식으로 외부 활용 가능
		- 평시 축전지에 대한 충전을 완료하고, 정기점검 시 이를 확인 - 지휘용앰프에 마이크를 연결한 후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정하여 활용
전 자 메 가 폰		- 출 력 : 30W 이상 - 사용거리 : 50m 이상 - 전 원 : 건전지(고정형 충전식 건전지 금지) - 기 타 : 음성전달 및 사이렌 전파 기능 포함
		- 평시 건전지를 분리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정상작동 및 예비 건전지를 확인 - 어깨에 거치한 후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정한 후 확성기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활용 - 필요 시 사이렌 스위치를 "ON"하여 위험 상황을 주변에 전파
교 통 신 호 봉		- 발 광 부 : 50cm 이상 - 전 원 : 건전지(고정형 충전식 건전지 금지) - 기 타 : 점등, 점멸 기능(교통통제 가능 밝기 확보)
		- 평시 건전지를 분리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정상작동 및 예비 건전지를 확인 - 손목에 교통신호봉 고리를 착용하고, 점등 스위치를 조정하여 수신호로 장비 활용
환 자 용 들 것		- 재 질 : 철재, 알루미늄 등(목재 재질 확보 금지) - 하 중 : 100 KG 이상 - 기 타 : 낙상 방지용 안전장치(벨트 등) (보관 용이를 위해 접이식 확보 권장)
		- 평시 들것의 접이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접히는 부분이 녹슬지 않도록 관리 - 접이식 들것을 완전히 펼친 후 2인 또는 4인이 1조가 되어 환자를 눕혀 원하는 장소로 이동
응 급 처 치 함		- 구 성 품 : 응급처치 용품 및 보관함 - 상처 소독을 위한 소독제, 탈지면, 거즈, 핀셋 등 - 상처·화상 치료약 및 붕대(탄력붕대) - 골절 임시 조치를 위한 부목(권장) 및 탄력붕대 - 붕대 등의 절삭을 위한 가위 ※ 응급처치와 관련된 용품 구성 다양화 권장
		- 정기점검 시 구성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적기에 교체하여 관리 - 경상자에 대한 지혈 등의 응급처치(압박붕대, 소독제, 밴드 등) 시에 활용
휴 대 용 조 명 등		- 형 태 : 개인이 휴대 및 착용(머리) 가능한 형태 (야간 작업 및 구조 수색에 적합한 것) - 전 원 : 건전지(건전지 병용 가능 시 충전식 가능)
		- 평시 건전지를 분리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정상작동 및 예비 건전지를 확인 - 항시 전원 스위치로 수색·구조에 활용하여, 수신호 필요시 점등 스위치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

I. 개 요

II. 훈련 실행지점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판 록

■ 민방위 장비 점검

- 점검일자 : 20 . . . 시 . . . 분까지
○ 점검시간 : . . . 시 . . . 부터 . . . 시 . . . 분까지

점검사항		점검자	관리책임자
○ 보관창고 습기, 도색 등 청결상태 ○ 장비 종류별 보유 현황판 관리상태 ○ 장비 종류별 구획보관 상태 ○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 교통 신호봉, 휴대용조명등의 건전지 관리상태 (충전, 분리보관, 여유분, 유효기간 등) - 장비 작동상태 점검 포함 ○ 응급처치세트 구성품 손망실, 유효기간 도래 여부 ○ 환자용 들것 관리상태(펼침, 안전벨트, 조임끈 결박 등) ○ 기타 추가 확보 장비의 작동 및 관리상태 ○ 현수파악(전수점검 및 시효 만료 예정품 분류) - 장비 과부족에 따른 읍·면·동별 이관 및 조정 필요사항 검토 ○ 신속 불출 저해요소 파악 및 제거 - 불출 경로의 장애물 제거, 신속 불출을 위한 장비 포장단위 확인 등 ○ 기타 장비 보관·운영 안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등			
조치내용		○ 양호 / 미흡 - 조치사항 - 조치예정 사항	



붙임 8

대피유도요원 배치(안)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 ○○건물 안전요원(공무원 ○○명, 민방위대원 ○○명 등)

※ 훈련 책임자: 000(000-0000-0000)

위 치	동쪽계단	서쪽 1계단	서쪽 2계단	남쪽계단	북쪽계단	총 책임자
5층						
:						
1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 ○○건물 평면도(이동통로)

평면도	이동통로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점

III. 확인 및 협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록

붙임 9

대피유도요원증(임무카드) 양식

※ 훈련기관 및 임무에 맞게 변경

○ ○
No. ○ ○ 읍 · 면 · 동 - ○ ○ 소 속 : ○ ○ 읍 · 면 · 동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임을 증명함. 20 . . . 민방위마크 ○ ○ 읍 · 면 · 동장 직인 ※ 본 증명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만 사용

※ 지역 훈련유도요원은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장)
직장 훈련유도요원은 해당 기관장명으로 명시 및 직인

○ ○							
○ 소속 : 00반 ○ 임무 : 주민대피유도, 각 반별 활동사항 기입 ○ 비상연락망 - 00 지구대 : - 00 소방서 : - 읍·면·동사무소 : - 민방위대장 : - 안전책임자 : ○ 배치도 - 현 위치(군무위치) - 유도구간 표시 - 중요 지형지물 명기 등 ※ 안내지도 복사 활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훈련전</td> <td style="padding: 5px;"> ○ 훈련유도요원증 휴대 ○ 휴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임무 숙지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경 보 발령시</td> <td style="padding: 5px;">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인근 대피구역으로 대피유도 ○ 완전 대피유도 후 자신도 대피 ○ 각 반별 활동사항 기입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경 보 해제시</td> <td style="padding: 5px;">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td> </tr> </table>	훈련전	○ 훈련유도요원증 휴대 ○ 휴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임무 숙지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경 보 발령시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인근 대피구역으로 대피유도 ○ 완전 대피유도 후 자신도 대피 ○ 각 반별 활동사항 기입	경 보 해제시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훈련전	○ 훈련유도요원증 휴대 ○ 휴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임무 숙지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경 보 발령시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인근 대피구역으로 대피유도 ○ 완전 대피유도 후 자신도 대피 ○ 각 반별 활동사항 기입						
경 보 해제시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붙임 10

건물 내 주민 대피유도 요령(안)

※ 훈련기관 및 여건에 맞게 변경

■ 훈련 전

- 훈련유도요원 신분증 휴대
- 메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임무 숙지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및 유도활동 실시
-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지

■ 화재경보 발령 시(주민대피)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출구(계단)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도요원은 호각, 신호봉 등으로 대피자들을 통제하여 질서있게 대피유도
- 계단 또는 경사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승강기 사용 금지)
- 주민(국민)이 흥분하거나 대피를 거부할 시, 당사자를 진정시키고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책임자 연락 및 훈련취지 안내
-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국민은 대피유도요원이 층별 유도반장에게 알린 뒤 대피 도움
- 피난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조용히 피난할 수 있도록 유지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훈련책임자 연락
- 각 층 유도요원은 계단으로 오는 대피자가 없을 경우 ① 해당 층내 유도요원끼리 소통, ② 훈련책임자에게 보고, ③ 담당구역 내 잔류자 확인, ④ 해당 층 책임자가 훈련책임자에게 최종보고·대피 후 반별 행동요령에 따름

■ 경보 해제 시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 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록

※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싼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 손잡이를 움켜쥐는다.
- 분말을 골고루 쏜다.



화재 시 119 신고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 평상시 화재 발생시 대피로를 익혀둔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붙임 11

대피구역 내 생활안전교육

■ 교육대상

- (지자체 주관) 대피소 내 대피한 시민, 민방위대원 등
-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관) 대피소 내 대피한 학생
- (사업장 및 공공기관 주관)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및 사업주

■ 교육과목

과목	교육 내용
필수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훈련준비 - 훈련 대상자 수에 적합한 교육용 모형(애니), 연습용 자동제세동기 확보 - 소방관, 전문교육강사 등 전문가 사전 확보 ○ 훈련절차: 전문가의 시범 → 실습훈련 실시 •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선택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해당지역(기관)과 관련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 필수 교육 및 해당 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선택하여 실시

■ 강사운영

- 소방서(구조구급대원), 대한적십자사(응급처치강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위촉한 민방위 강사, 인근 군부대 등 협조



붙임 12

실습체험 예시

※ 본 계획은 예시로서 민방위 제도안내 및 안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가능한 계획 수립

■ 메타버스 및 VR장비 활용 안전교육 실시(예시)

- 목적 : 실제와 같은 상황 조성과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및 재미 요소를 추가해 시민들의 학습 효과 및 교육 몰입도 제고
- 내용 : 첨단장비 활용, 주민대상 민방위 제도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 화재현장을 화면상에 실제처럼 구현하여 소화기의 사용법을 직접 실물을 활용해 익히는 3D 체험형 교육
 - 화면 속 응급환자를 실제 CPR모형과 연계,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하여 정확한 동작을 학습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험행사 실시 등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대상 : 미취학 아동(만 3세 이상),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 장소 : 공원, 학교, 공설운동장, 축제장 등(우천 시 실내)
- 주요내용 : 재난생활안전 등 분야별 종합 안전체험교육 실시
- 운영방법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 협력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붙임 13

민방위 훈련 참여자 민방위교육인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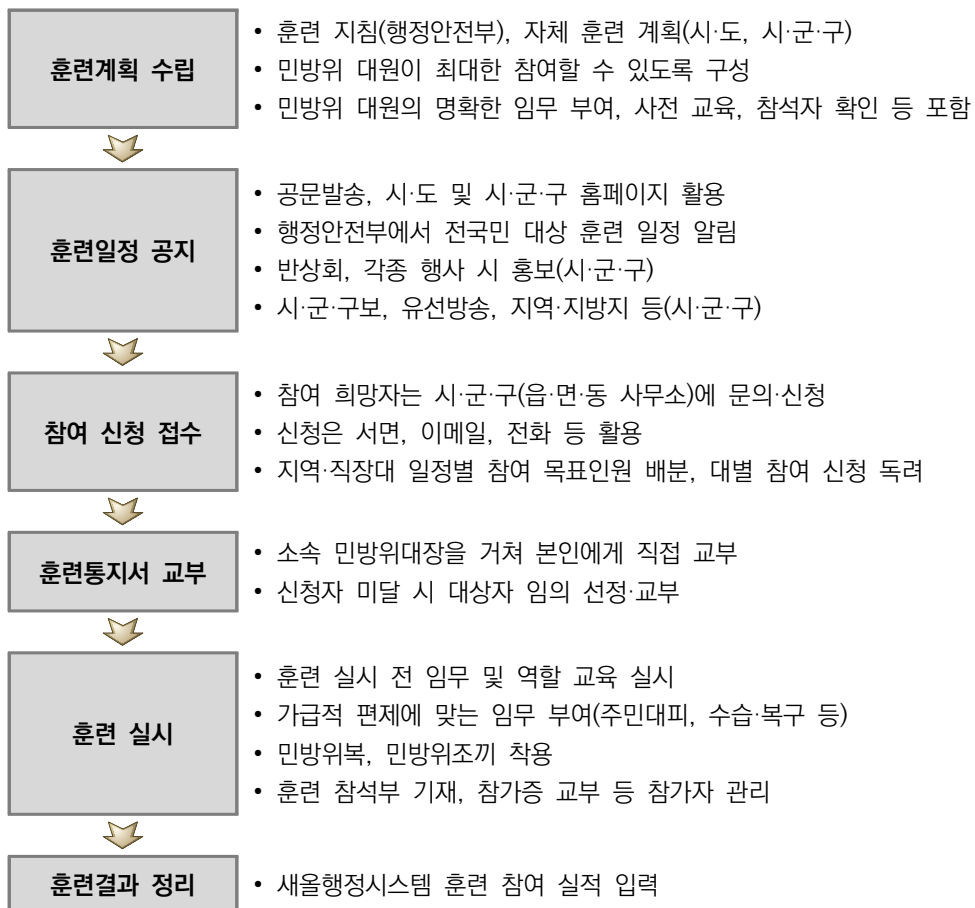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인정 대상

- 국민참여 민방위 대피훈련시 대피유도요원 참여자
- 민방위사태대응 종합훈련, 시·군·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마을단위훈련, 직장·단체 자체 재난대비훈련 참여자

■ 인정 절차

- 훈련 실시 후 현장에서 참석확인서를 발부하고 교육이수 인정 조치





■ 인정내용

- 훈련 참여자 연간교육 4시간 교육인정
 - 단, 직장·단체 자체훈련 참여대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여 인정한 대원에 한함
 - ※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는 현지확인 없이 시·군·구로 사전에 계획보고, 훈련 후 결과보고(7일 이내)시 인정
 - 해당연도 교육이수자는 교육의무 이수시간에 따라 차년도, 차차년도 교육이수 인정(최대 2년)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면조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록

붙임 14

화재별 특성 및 소화 방법

■ 일반화재(A급화재-백색)

-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화류, 목모, 대패밥, 냅마, 종이, 벚짚, 고무, 석탄, 목탄, 목재 등의 일반가연물과,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의 합성고분자 물질이 가연물이 되는 화재
-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소화

■ 유류화재(B급화재-황색)

-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류(油類)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화재보다 위험
-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

■ 전기화재(C급화재-청색)

- 전기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
- 소화 시 물 등의 전기전도성을 가진 약제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 금속화재(D급화재)

-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 금속류 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피상보다는 분말상으로 존재할 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
 -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 시 수계(水系) 소화약제는 사용금지, 건토, 건사 사용 소화
- ※ 수계소화약제 : 물, 포, 강화액 등



■ 가스화재(E급화재)

- 상온, 상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가연물이 되는 화재
- 주로 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천연가스, LPG, 부탄 등과 기타의 가연성가스, 액화가스, 압축가스, 용해가스
- 비정상연소 형태인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가스가 지속적으로 누출되면서 연소하고 있는 경우, 가스의 차단 없이 발생한 화염만 제거하는 것은 폭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급되는 가스의 근본적인 차단 우선

■ 식용유화재(K급화재, Kitchen Fire)

- 식용유는 인화점과 발화점의 온도차가 적고 발화점이 비점 이하
- 화재가 되면 유온이 상승, 바로 발화점 이상이 되며,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유온이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곧 재발화
-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야채, 상온의 식용유 등, 물 이외의 것으로 냉각한다거나, 뚜껑을 덮어 질식시키는 것이 효과적

붙임 15

건물특성 별 화재특성

구 분	화재특성
목조건축물	○ 순식간에 플래시오버에 도달하며 온도도 급하게 상승 ○ 격렬히 연소하고 특히 벽체 상부와 지붕의 일부가 불타 내려 앉으면 연소는 최성기에 달하며 온도도 1,100℃ 초과 ○ 최성기 이후 오히려 공기의 유통이 좋아져 온도는 급속히 저하 ○ 출화부터 최성기까지가 약 10분, 최성기부터 감쇠기까지가 약 20분으로 진행
내화조건축물	○ 주요 구조부가 연소해서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연소에 영향을 주는 공기의 유통조건이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 ○ 화재 지속시간은 목조화재가 30분 정도 인데 비해 2~3시간, 때에 따라 수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 최고온도는 800~900℃의 경우가 많은데 고온이 오래 유지되며 최성기의 최고온도는 실내의 가연물량, 창 등의 개구부 크기 및 그 열적 성질에 의해 정해짐 ○ 발연량도 목조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
고층 다중밀집건물	○ 무창형 건물은 화염이 서서히 진행, 내부연기가 급격히 확산되어 대피에 장애 초래 ○ 다창형 건물은 화열에 의한 유리파손으로 연소시 공기유입이 빨라 단시간 내 화염이 최대로 도달 ○ 연돌 효과에 의해 농연이 급격히 건물 전체로 확산, 연기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 발생 ○ 복합·고층건물은 다수인이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을 피난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명피해 우려 높음
지하 다중이용시설	○ 출입구로부터 화연이나 농염분출 등 상황예측 곤란 ○ 공기공급 제한으로 불완전 연소 및 연기 다량 발생 ○ 지하공간이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어 피난·대피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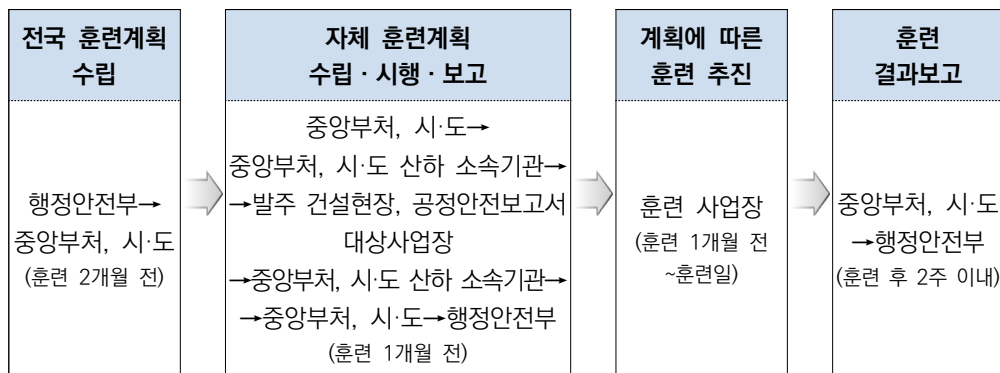
붙임 16

사업장 대피훈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건설현장, PSM사업장 훈련안내, 독려

■ 훈련 개요

- (대상)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발전소 등 공정안전 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 (훈련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시간계획) 14:00 화재경보를 시작으로, 20분이상 훈련하되, 각 기관별 비상 대피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대피유도 후 심폐소생술,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필수 교육

■ 훈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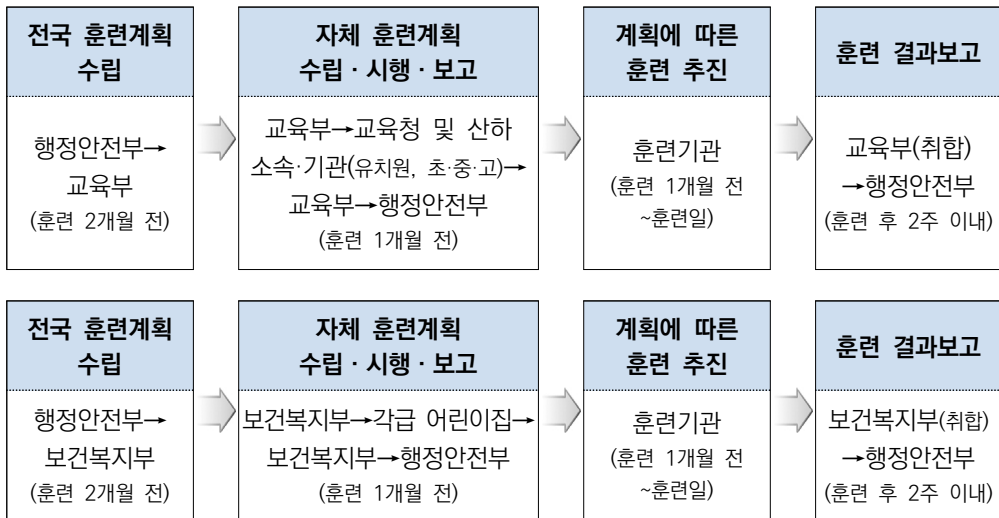
- 건설현장은 발주한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훈련을 이행·점검
 - 해당 건설현장에서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에 승인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해 발생시 대피계획 참고
- 발전사, 석유공사 등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른 비상대피계획에 따라 대피훈련 실시·자체 점검
 - 해당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상급기관에서 점검

붙임 17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피훈련

■ 훈련 개요

- (훈련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어린이집
- (훈련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시간계획) 14:00 화재경보를 시작으로, 20분 이상 훈련하되, 각 기관별 비상 대피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 대피유도 후 심폐소생술,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필수 교육

■ 훈련 방법

〈훈련 전〉

- 민방위 훈련을 학사운영계획에 반영
- 소방·방화 시설 상태 확인, 대피경로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점검
- 기관장이 훈련 사전점검 및 현장 지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팀 대기 협조
- 학생과 교직원의 훈련 시간 안내를 위한 현수막, 엑스배너 등 설치



〈 훈련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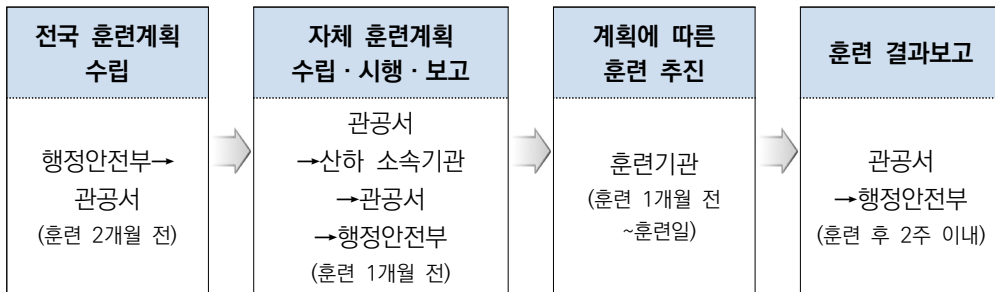
- 정보 및 방송 전파
- 학생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내방송 실시
- 대피장소가 있는 학교는 대피소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실제 대피훈련을 교대로 실시, 대피소가 없는 학교는 층별, 반별 대피계획에 의거하여 1층까지 질서정연하게 대피,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
 - 유사시에 대비한 층별, 반별 대피계획과 지도교사 배치계획 및 안내방송문을 시나리오화하여 방송실에 상시 비치
- 대피장소 또는 1층으로 대피한 학생들에게 생활안전교육 실시(교실 내 영상시청 교육 대체 가능)
 - ※ 부스 운영으로 훈련안내 및 홍보, 실습체험 등 대체실시 가능(붙임 12)

붙임 18

전국 관공서 대피훈련

■ 훈련 개요

- (대상) 화재예방법 제39조 관련, 공공기관(입법부, 사법부 포함)
- (훈련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시간계획) 14:00 화재경보를 시작으로, 20분이상 훈련하되, 각 기관별 비상 대피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대피유도 후 심폐소생술,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필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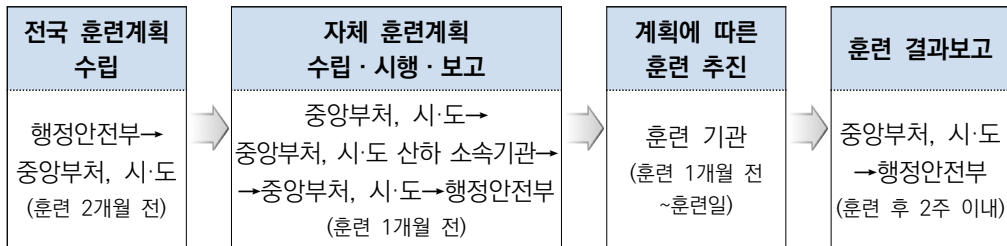
■ 훈련 내용

-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內 입주기관은 청사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14:00~14:03 경보 발령 실시
-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外 입주기관은 자체 방송 실시
- 소방·방화 시설 상태 확인, 대피경로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점검
- 자체 소방대피계획에 따른 직원들 대피훈련 실시
- 민원인과 함께 훈련하여 화재대피 역량 강화



■ 훈련 개요

- (대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등
 - 화재예방법 제20조의2 관련, 공항시설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예방법 제24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시설(청소년 수련원 등)
 - 재난안전법 제34조의6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
- (훈련계획 수립·제출 일정)



- (훈련시간계획) 14:00 화재경보를 시작으로, 20분이상 훈련하되, 각 기관별 비상 대피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 대피유도 후 심폐소생술,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필수 교육

■ 훈련 내용

- 소방·방화 시설 상태 확인, 대피경로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점검
- 각 개별법에 따른 대피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자체훈련 점검 후 결과 제출
- 필요시 상급기관에서 점검 실시
- 민원인과 함께 훈련하여 화재대피 역량 강화

민방위 표준훈련 지침서

2023년 민방위 실시훈련(민방공, 화재) 중심



부록 :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1. 민방공
2. 화재
3. 지진·해일
4. 산불
5. 풍수해
6. 유해화학물질 누출
7. 방사능 누출





1

민방공 경보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체제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민방공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바상식 NOTE

비상시에는 민방공 경보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경보방송은 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경보단말), 라디오·TV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CBS)를 실시합니다.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연조사항

IV. 우형편한 편 방법

V. 부록

01



경계경보시 국민행동요령



TIP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 전달 및 대피시켜 주세요!

경계경보 발령시



가스 차단, 전기코드 분리

비상용품 대피소로 이동

개인보호장비 정비

- 즉시 TV,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하며,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을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02



공습경보시 국민행동요령

공습경보 발령시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

고층건물에서 대피

- 지하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소 등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고층건물이라면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생활필수품 등의 비상대비물자를 가지고 대피합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모두 하차하여 대피하도록 합니다.
- 대피 후에는 계속 정부 방송을 들으며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화생방경보 발령시 국민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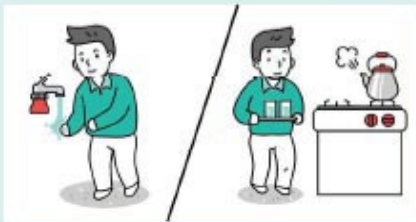
- 화생방 경보 발생 시, 화생방 일반 방독면을 착용하고, 긴 옷 등을 활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한 후 안내에 따라 비오염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대피가 제한될 경우 건물의 저층 보다는 상층부로 이동하고, 공기기 차단, 창문 밀폐 등의 조치를 통해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옥상 등의 노출된 고지대 대피금지)
- 비오염지역으로 대피 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공기기 차단, 창문 밀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닐포장 된 음식물과 밀봉된 식수를 가지고 대피합니다.
- 기타 상황은 정부의 안내(라디오 등) 및 조치에 따릅니다.

핵·방사능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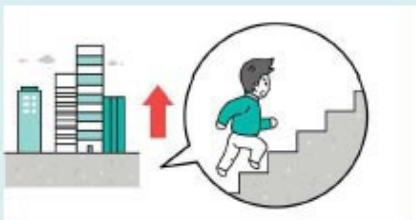
만약위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핵폭발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여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물무기 피해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합니다.

화학무기 피해



고층건물에 있다면 되도록 고층부에서 외부의 공기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외부 공기가 순환되지 않도록 공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문, 창문 등을 닫아 외부 오염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바상대비상식 NOTE

화생방이란?

(化生放, 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화생방전은 “화학의(Chemical)”, “생물학의(Biological)”, “방사선학의(Radiological)” 머리글자를 따서 화생방(CBR) 무기로 약칭하기도 합니다.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운영편안한 방법

V. 부록



일상생활 비상대비 3가지

대피장소·용품·요령 알아두기

공습·포격, 핵·방사능 및 생물·화학무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피장소를 확인하고 대피용품을 준비합니다.

STEP 01

대피장소 확인

생활 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대피용품 준비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생활필수품·화생방 개인보호장비·
비상대비물자를 가정에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교체합니다.



STEP 03

신속한 대피

공습·포격, 핵·방사능, 생물·화학무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하고, 상황별 대처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상황별 대피장소와 대피요령을 알아봅니다.

일상생활 장소(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상 황	장 소
공습·포격	• 민방위 대피소,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시설 등
핵·방사능	• 방풍문이 설치된 민방위 대피소, 지하상가, 지하철, 건물 지하
생물·화학 무기	•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장소 • 공기순환·정화 시설을 갖춘 대피시설(지하철, 지하상가 등) •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야외에서 신속히 대피할 경우 고지대, 건물 고층의 실내

유형별 대피용품을 알아봅니다.

상황에 맞는 대피용품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피용품 준비



공습·포격

라디오, 건전지, 휴대용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 식수, 식량, 취사도구, 침구류, 상비약품 등

핵·방사능

2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식수와 식품, 저염에 필요한 식염수, 비닐 및 점착테이프 등의 대피소 보강 재료 등

생물·화학 무기

방독면, 마스크, 세제, 비누, 접착·절연 테이프, 비옷,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

01



STEP 01

대피장소 확인



비상대비상식 NOTE

학교나 직장, 집 밖에서 공습·포격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을 찾으십시오.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STEP 02

대피용품 준비



비상대비상식 NOTE

방독면 대체장비 물자

방독면이 없는 경우, 손수건, 비닐봉지, 마스크, 물에 적신 의류 등으로 대체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page 참조)

03



STEP 03

신속한 대피

민방공 경보 및 안내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며 상황별 대피요령을 알아 두고 대비합니다.



민방공 경보시 사이렌 및 음성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차량을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대피합니다.
- 대피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낮은 곳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깁니다.

핵·방사능 피해

1. 핵, 방사능 피해 전



핵·방사능 피해에 대비하고 신체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① 민방공 경보가 발생하면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등의 지하장소나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 ② 대피용품을 휴대하고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 ③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핵폭발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양손으로 눈·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핵, 방사능 피해 중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합니다.

- 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살펴 낙진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② 피폭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③ 오염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며 납·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시설 안으로 대피합니다.
- ④ 대피 후에는 절연·접착테이프, 천 등으로 입구를 막아 낙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3. 핵, 방사능 피해 후



상황파악 후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① 핵폭발, 바람의 방향, 피해 상황 여부, 가용한 대피소 등을 파악합니다.
- ② 대피소에서는 라디오를 통하여 정부의 안내를 경청하고, 대피한 사람들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 ③ 2주 이상 대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비상대비상식 NOTE

핵폭발의 섬광을 봤더라도 폭풍이 오기 전까지 몇 초 안에 바닥에 엎드리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차폐물로 보호할수록 안전)

핵폭발을 인지한 것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니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하고 낙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72시간(3일)이 경과되면 최초 방사능의 1/100 정도로 줄어 간헐적 행동이 가능하고, 2주가 경과되면 일상적 행동이 가능합니다.



생물무기 피해란 병원균이 포함된 미생물을 무기로 살포하여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생물무기 피해



생물무기 피해시 전염 및 확산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병원균에 따라 고열,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 대표적인 생물무기로는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이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및 환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방독면이나 마스크 착용 후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정부방송의 안내에 따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음식물과 물은 끓여서 섭취해야 하며 몸과 생활공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 및 동식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성 액체,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의 화학 무기(화학작용제)살포로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화학무기 피해



화학무기 피해시 신속히 대피하고 오염물질은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1. 실외에 있을 경우

-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적절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방독면,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손수건, 마스크,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2. 실내에 있을 경우

- 출입문, 창문, 환풍기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봉해야 합니다.
오염된 신체부위는 비누, 세제로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씻고,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해야 합니다.



TIP

생물·화학무기에는
호흡기 보호, 피부 오염 예방이
우선이에요.



2

화재 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대비

■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과 대피훈련을 해야 합니다.

1 사전점검

눈으로는

-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 확인
- ✓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 확인

귀로는

- ✓ 평소와 나지 않던 이상한 소리 확인

코로는

- ✓ 타는 냄새 확인

손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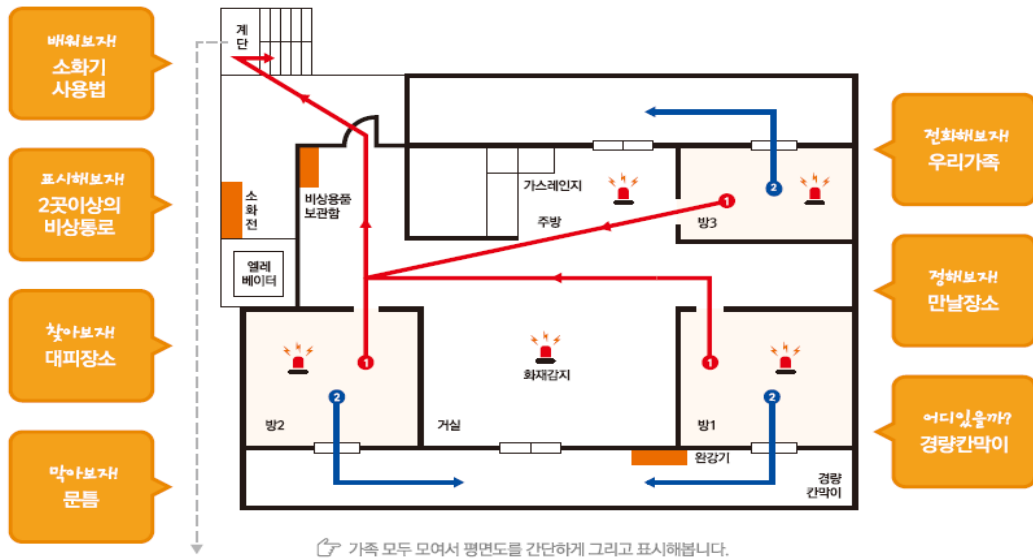
- ✓ 만져보거나 두들겨 보거나

행동으로는

- ✓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 ✓ 난방기구 등 전열기구 사용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2 대피훈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신속히 움직인다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내용 Tip

-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 사전약속
-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물건 목록작성과 행길 사람 선정
-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연락해야 할 대상 선정
- 문틈을 막아야 할 경우 청테이프 또는 수건
- 외부 대피시 사용할 수건 등 대피에 사용할 물건
- 긴급 대피한 경우 만년 장소와 비상연락망

☞ 옥상출입문은 항상 열려있는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피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화재대처

■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알아둬시다!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당긴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동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꼭 움켜잡는다.
4. 분말이 끝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 소화전 사용법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청)을 잡고 방수지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소방관이 전하는 안전상식

■ 119 신고절차

본인의 위치(주소) ▶ 현재상황 ▶ 부상여부 ▶ 상황요원 안내에 따라 행동

	일반전화 ① 수화기를 들어 발신을 확인 ②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 ③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휴대전화 ① 119 숫자 누르기 ②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인터넷 ① 인터넷 접속 ②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③ 성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 ④ 사고개요 정확히 기록 ⑤ 등록여부 확인		공중전화 ① 수화기 들기 ② 긴급버튼(적색) 누르기 ③ 119 숫자 누르기 ④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대류현상에 따라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1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코와 입) 보호한다	2 자세를 낮춘다	3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4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외우기 쉽도록 4단계 절차로 기억합니다.

1 반응 확인	2 119 신고 및 AED 요청	3 가슴 압박 30회	4 인공호흡 2회

■ 알아둬시다! 은연중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

재난설비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주방용자동소화기



3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일까?

그간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주변 나라에 비해 지진에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경주지진(규모 5.8)과 포항지진(규모 5.4)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지진 피해 사례



첨성대 지진피해



담장 붕괴



낙하물 차량 파손



건물 외벽 탈락



건물 내부 벽체 파손



내벽 파손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점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유형별 훈련 방법

V. 부록

01

지진, 평소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둡니다.
-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 ▶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 ▶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 ▶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 둡니다.
- ▶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 ▶ 건물의 균열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 ▶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 머물고 있는 곳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둡니다.
- ▶ 비상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 둡니다.
- ▶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둡니다.



●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해 둡니다

☞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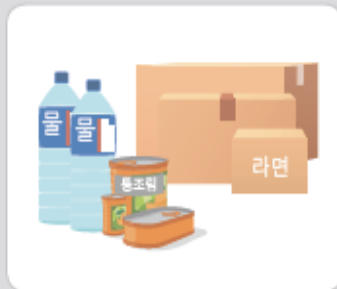
☞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비상용품

※유통기한은 사전에 확인 필수!

〈비상식품〉

물, 통조림, 라면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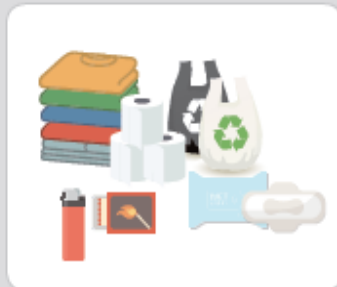
〈구급약품〉

연고, 감기약, 소화제, 복통중인 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생활용품〉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기타〉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등



※ 유아 비상용품 : 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

02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도로의 손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 두도록 합니다.

●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합니다

-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진정보 확인 방법

지진재난문자, TV자막방송,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기상청 날씨 알리미), 기상청 홈페이지, 131ARS, 모바일메신저(라인) 등

대피 시 주의 사항

- | | |
|--|--|
| <p>01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p> <p>02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p> <p>03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p> <p>04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p> | <p>05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p> <p>06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뎈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p> <p>07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p> <p>08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p> |
|--|--|



실내에서의 단계별 지진 행동요령



감염병 유행 시 주의사항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안전한 야외 공터, 학교 운동장 등 대피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를 때에는 대피자 간 거리를 두며, 대화를 자제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손을 먼저 씻고, 낙하물 및 가스·전기 등 피해물이 없는지 안전에 유의하며 살펴봅니다.

03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집에 있을 때

- ▶ 가구, 텔레비전 등 낙하물을 피해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 ▶ 주방에서는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합니다.
- ▶ 욕실에서는 몸을 낮추고 목욕대야, 수건, 목욕가운 등으로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 학교에 있을 때

- ▶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 ▶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니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고층 건물에 있을 때

- ▶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게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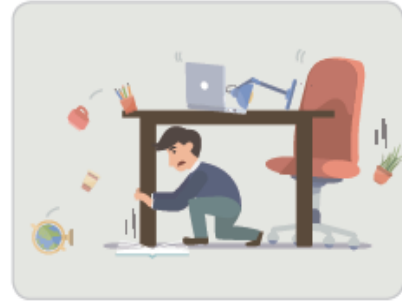
●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고층건물은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에 있을 때

- ☞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큼니다.
- ☞ 사무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백화점·마트에 있을 때

- ☞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 ☞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 ☞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면, 손잡이를 잡고 앉아서 버틴 후 침착히 벗어납니다.



● 극장·경기장에 있을 때

-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 ☞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물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 ⚠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 ⚠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둡니다.
- ⚠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에는 열쇠를 꽂거나 놓아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 운전 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에 의하여 제대로 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변을 충분히 살피면서 교차로를 피하여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워둡니다. 특히 무너질 것 같은 교량, 고가도로 위에는 되도록 주차하지 않습니다.

● 전철을 타고 있을 때

- ⚠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 ⚠ 돌·바위가 굴러 내려오거나 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한 경사지를 피해 평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04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평소 준비사항** : 가족, 친척, 이웃 등 지진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 둡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보호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가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보호자(조력자)의 역할** : 안전취약계층과 평소 지진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대피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 ㉠ 우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으로 상황 파악을 합니다.
- ㉠ 대피가 필요한 경우, 바닥에 낙하물이 있는지 장애물을 점검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화기가 있는 장소의 점검 등을 요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 ㉠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대피합니다.
- ㉠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를 잠그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책·방석·베개 등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 ㉠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 ㉠ 야외 넓은 장소 또는 대피장소에 가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관공서 직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합니다.





● 청력이 좋지 않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 ▶ 텔레비전의 자막방송과 휴대전화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합니다.
- ▶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호루라기 등으로 소리를 내어 장소를 알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 ▶ 주변사람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필요한 배려를 받습니다.
-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도구 (종이, 펜 등)을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 ▶ 서둘러서 급히 뛰어가거나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 ▶ 가족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미리 정한 것을 지킵니다.
- ▶ 혼란스러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미국의 지진 대피요령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출처 : www.earthquakecountry.org/disability



05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유모차 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대피 시 유모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엮는 띠를 준비해 둡니다. 대피 시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을 자유롭게 해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합니다

- 지진 상황에서는 유리 파편, 건물 잔해 등으로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안고 대피해야 합니다. 엮을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고, 안거나 엮더라도 반드시 신발을 신깁니다.



● 손을 꼭 잡고 행동요령을 확인합니다

-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헤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고 대피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행동요령을 알고 있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며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임신부의 경우 계단 등을 통해 대피 시, 발 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이동합니다.

06

지진대비 지진발생 대피후 지진상식

흔들림이 멈추거나 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함께 있는 가족끼리 부상이 없는지 집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소방서(119) 등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며, 귀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유의하고, TV·라디오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하나,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 (지역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둘,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셋,

수도관에 파손 등 이상이 있다면 밸브를 잠급니다. 하수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시설물 관리 책임 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4

산불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예방 안내

1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5월, 11~12월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3 산불 관련 처벌 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국민행동요령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산불로 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굵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의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



2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안전취약계층 〉

-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알림벨 울리기 등) 한다.
- 빠른 시간 내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 종사자 또는 도우미 〉

- 재난 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수시로 체크한다.
- 피난 상황 발생 시 피난방송을 실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임무 분장 체계를 유지한다.
- 출입구를 개방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안전취약계층을 임시 대피 공간으로 이동시켜 구조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피여부를 재확인한다.

〈 일반국민 〉

-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119, 산림관서, 경찰서, 해당 안전취약시설에 신고한다.
- 진화차량이 취약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구조·구급차가 신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력이 되는 건장한 국민은 취약계층의 구조활동을 돕는다.

4 산불진화 참여 행동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괘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5 산불 예방 안내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단위 공동으로 추진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이용해 주세요 !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산행에 앞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5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1 태 풍

예비특보 발령시 행동요령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에 대비합니다.

예비특보 발표 시

1.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줍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태풍의 이동 경로, 도달 시간, 강도 등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줍니다.
 -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대피 시설,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과 단단하게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침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둡니다.
- 수도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외출은 자제하고 어르신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태풍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태풍 특보 발표 중

1.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가족과 이웃 등 필요한 사람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므로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도록 하고 가급적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 가스밸브는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전등,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해안가,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장애인 등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피할 때는 침수되거나 파손된 도로, 교량 주변은 피하도록 합니다.
- 이동식 주택이나 조립식 건물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합니다.
- 운항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태풍 이후 행동요령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웃과 함께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합니다.

태풍 이후

1. 가족과 이웃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태풍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오물, 기름, 동물 사체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며 침수된 농경지를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5237,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http://www.kgs.or.kr>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http://www.kesco.go.kr>

2 집중호우

평상시 행동요령

집중호우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재난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사전 준비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 산사태, 해일 등 과거에 발생했던 피해나 재해위험 요인을 확인합니다.
 -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하고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2. 재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 지역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알아 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 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 대피 장소, 대피 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고 대피 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4.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한 곳에 준비해 둡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합니다.



호우 예비 특보 발표 시 행동요령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예비특보 발표 시

1. 호우예비특보 지역과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농경지는 배수로로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둡니다.
 - 수도물 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재난정보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둡니다.

5. 외출은 자제하고 어르신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호우특보 중 행동요령

호우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이웃이나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우특보 중

1.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가족과 이웃 등 필요한 사람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므로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도록 하고 가급적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 가스밸브는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전등,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해안가,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장애인 등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집중호우 이후 행동요령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이웃 등 주변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집중호우 이후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호우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의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오물, 기름, 동물 사체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며 침수된 농경지를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5237,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http://www.kgs.or.kr>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http://www.kesco.go.kr>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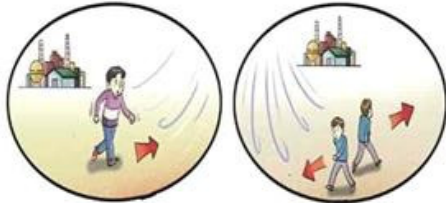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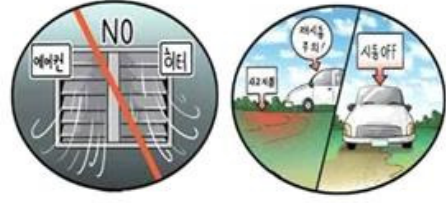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비 국민행동요령

1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취약계층 포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로 발생하는 독성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 대피가 필요한 경우(대피 안내방송 등 알림 이후), 현장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경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2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이미지 행동절차

대피내용 알림 시  안내방송(방송시설, 사이렌 등)을 경청하고,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안내사항을 숙지합니다.	화학사고 발견 시  화학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119에 신고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입과 코를 젖은 천으로 막고, 비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합니다.
풍향에 따른 대피방법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왔을 경우 ※ 대부분의 독성물질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	차량으로 대피 할 때  사고지역을 지날 때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끕니다.
실내로 대피할 때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을 막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에어컨·히터·환풍기를 끕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노출된 옷과 신발은 밀봉하여 버립니다.

I. 개요

II. 관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연조사항

IV. 유형별 관련 방법

V. 부록

7

방사능 누출 대비 국민행동요령

1 정의

- 방사선비상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

※ 비상명칭은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 류	내 용
백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필요 없음)
청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적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원자력시설 :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

2 방사선 비상 상황을 알리는 방법

- 방사선 청색 또는 적색비상 발령 시, 경보방송망,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등을 통해 방사선비상 상황 알림

* 백색비상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보망 등을 통한 주민 상황통보는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3 방사선 비상 상황 시 행동요령

구 분	행동요령
기업 공공기관 학교	• 방사선 비상 시 각 기관 비상대응요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환풍기 정지 •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가정	〈실내 대피 통보를 받은 경우〉 • 외출 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 정지 •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음.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 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음 * 오염지역을 지나온 경우 입었던 옷과 신발은 비닐에 싸서 밀봉 •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안전지역(구호소) 대피(소개) 통보를 받은 경우〉 • 외출 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 준비물 :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폰(충전기), 평소 먹는 약 등 필수품 •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잠금 •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우리에 가둔 후 충분한 먹이를 줌 •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대피완료 표시(출입문에 흰수건) • 마을별로 지정된 집결지로 걸어서 이동(지자체 비상요원, 마을 이장 등의 안내에 따름) • 지자체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제공차량 등으로 구호소로 이동 • 구호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재민 등록

4 유의사항

- 방사선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국민들에게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령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 같은 방사선비상 상황이라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은 청색비상이 발령되면 지자체의 별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I. 개요

II. 훈련 실행지침

III. 확인 및 점검사항

IV. 운영 및 훈련 방법

V. 부록

- 구호소에서는 이재민 등록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므로 학교, 병원, 직장 등에 있는 가족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비상시에는 통화량이 폭증하여 휴대전화 등이 불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내나 구호소에서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세요.
- 구호소에서는 음식물과 잠자리,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됩니다.
- 갑상선보호약품(KI)의 분배와 복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시합니다.
(임의복용 금지)

5 주민 보호 조치 시행방법 개요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청색비상(또는 적색비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원자력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사업자경보망을 통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원전 중심 반경 3~5km)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보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이·통장을 통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통보하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TV·라디오 등으로 알려드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휴대폰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합니다.
-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됩니다.
 - 방사능영향이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비상 상황인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방사성물질 방출 이전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내의 주민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구호소로 소개하게 되며,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중심 반경 20~30km)은 풍향, 풍속, 강수량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소개, 옥내대피 등 적절한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방출된 이후에는 환경감시결과를 반영하여 방사능 영향이 미치기 전에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개를 지시하게 되면, 소개 대상 주민은 마을 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 집결지는 통상 마을회관, 기차역,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마을 주민 누구나 알고 있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구호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방사능 구름)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추 수 있는 실내인 각 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소의 선정, 물품 보급, 급식 방법 등 구호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 등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색·청색·적색비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비상 단계	방사선 영향이 원자로건물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백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백색비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행동요령</th> <th>정부 대응</th> <th>지자체 대응</th> </tr> </thead> <tbody> <tr> <td>• 평상시와 같이 생활</td> <td>•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운영</td> <td>•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td> </tr> </tbody> </table>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운영	•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운영	•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									
청색비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행동요령</th> <th>정부 대응</th> <th>지자체 대응</th> </tr> </thead> <tbody> <tr> <td>•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준비</td> <td>•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발족 운영</td> <td>• 주민보호조치 준비</td> </tr> <tr> <td></td> <td>•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발족 운영</td> <td></td> </tr> </tbody> </table>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준비	•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발족 운영	• 주민보호조치 준비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발족 운영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준비	•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발족 운영	• 주민보호조치 준비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발족 운영										
적색비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행동요령</th> <th>정부 대응</th> <th>지자체 대응</th> </tr> </thead> <tbody> <tr> <td>• 지자체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합니다.</td> <td>• 주민보호조치 결정 • 원전 비상대응 및 사고 수습 통제</td> <td>• 주민보호조치 실행</td> </tr> </tbody> </table>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지자체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 주민보호조치 결정 • 원전 비상대응 및 사고 수습 통제	• 주민보호조치 실행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지자체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 주민보호조치 결정 • 원전 비상대응 및 사고 수습 통제	• 주민보호조치 실행									

대피 준비 ①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면,
외부 공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②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피 안내를 받으면

마을 주변 집결지로 이동한 후,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용,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지자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 1차 집결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부는 구호소에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각 기관 또는
지자체 차량으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구호소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리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경북	가장군	장안읍(일부), 일광면(일부)
울산	울주군	서생면(일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부산	가장군	장안읍(일부), 일광면(일부), 칠마면, 정관읍, 가장읍
	해운대	송정동, 좌1~4동, 반송 1~2동, 반여3동, 반여 1, 2, 4동(일부), 중 1~2동(일부)
	금정구	금사동, 서3동(일부), 부곡 1~3동(일부), 구서 1동(일부), 구서 2동, 남산동, 청룡노포동, 산두구동
울산	울주군	서생면(일부),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동촌면, 삼동면(일부), 연암읍(일부), 범서읍(일부)
	남구	아름장성포동, 선암동, 신정 1~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대현동, 수암동
	중구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진하 1~2동, 남목 1-2-3동
	동구	학성동, 반구 1~2동, 복산 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문동, 병영 1~2동, 약사동
	북구	염포동,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일부), 송정동(일부)
경남	양산시	동면,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월성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경북	경주시	김포읍, 양북면, 양남면
	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울산	중구	병영 1동, 병영 2동, 학성동, 반구 1동, 반구 2동, 복산 1동, 복산 2동, 상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문동, 약사동
	동구	남목 1동, 남목 2동, 남목 3동,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진하 1동, 진하 2동
	북구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남구	신정 1동, 신정 2동, 신정 3동, 신정 4동, 신정 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아름장성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울주군	범서읍, 연암읍, 두동면



한빛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부)
전북	고창군	상하면 (일부)

간접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부), 영광읍, 백수읍, 대마면, 묘평면, 불갑면, 군남면, 군서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무안군	해제면
	장성군	삼서면, 황룡면, 삼계면
전북	함평군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고창군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성송면, 대신면, 삼관면, 상하면(일부), 흥덕면, 공음면, 해리면, 신원면, 부안면
	부안군	진서면, 보안면, 변산면, 위도면, 줄포면

한울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경북	울진군	북면(일부), 죽변면(일부)
----	-----	-----------------

간접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경북	울진군	북면(일부), 죽변면(일부), 울진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가성면
	봉화군	석포면
강원	삼척시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민방위 표준훈련 지침서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TEL. 044-205-4369

FAX. 044-205-8906